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 2018-01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2018. 4.

본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는 2018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47)

【참여진】 김정민(총괄)·권나경(중국)·박은정(대만)·양지영(일본)·정승훈(유럽연합)·성경숙(독일)·김채린(프랑스)·방선녀(미국)·이민주(호주)

목 차

제1장 개요	1
1. 개요	3
2. 조사 내용과 방법	5
3. 제외국 현황	6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요약>	7
제2장 국가별 현황	11
I. 중국	13
1. 일반 현황	13
2. 위생용품의 정의	14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15
4. 위생용품 관리체계	16
5. 최근 동향	26
II. 대만	27
1. 일반 현황	27
2. 위생용품의 정의	29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30
4. 위생용품 관리체계	33
5. 최근 동향	42
III. 일본	45
1. 일반 현황	45
2. 위생용품의 정의	47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49
4. 위생용품 관리체계	52

목 차

IV. 유럽연합	61
1. 일반 현황	61
2. 위생용품의 정의	62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64
4. 위생용품 관리체계	66
V. 독일	71
1. 일반 현황	71
2. 위생용품의 정의	72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74
4. 위생용품 관리체계	79
VI. 프랑스	81
1. 일반 현황	81
2. 위생용품의 정의	82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84
4. 위생용품 관리체계	85
5. 최근 동향	89

목 차

VII. 미국	91
1. 일반 현황	91
2. 위생용품의 정의	93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95
4. 위생용품 관리체계	97
VIII. 호주	101
1. 일반 현황	101
2. 위생용품의 정의	102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104
4. 위생용품 관리체계	106

제1장 개 요

개 요

1. 개요

- 국민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동안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생산·수입 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체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¹⁾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 이쭉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²⁾
 - 과거 위생용품(세척제, 1회용 물컵·손가락·젓가락·이쭉시개, 위생종이 등)은 1999년 폐지된 (구)'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가 나타남
 - 이에 그 간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기구 등을 위생용품으로 통합관리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2017년 4월 제정하고,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음³⁾⁴⁾
- 처는 현재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작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 2018년 3월 21일 신설되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도 잇따라 제정 절차를 밟고 있음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종류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과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을 마련하고, 위생용품 시행령에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2종을 추가 지정함⁵⁾
- 이에 국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하고자 해외 주요국의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을 조사함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식품의약품안전처, 16.10.25

2)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16.10.25

3)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18.1.3

4)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8.3.18

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18.3.29

<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순번	종류	시행 전	시행 후
1	세척제	(구) 공중위생법 (복지부)	위생용품 관리법 (식약처)
2	행금보조제		
3	위생물수건		
4	일회용 이쑤시개		
5	일회용 종이냅킨		
6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7	일회용 컵		
8	일회용 숟가락	식품위생법 (식약처)	
9	일회용 젓가락		
10	일회용 포크		
11	일회용 나이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부)	
12	일회용 빨대		
13	화장지		
14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15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16	일회용 행주	-	
17	일회용 타월		
18	팬티라이너 * 의약외품 제외		
19	건티슈 * 최종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 식품 섭취 활동과 관련한 위생용품 15종 별도 표시

2. 조사 내용과 방법

□ 조사 대상 국가

- 중국
- 대만
- 일본
- 유럽연합 및 회원국(독일, 프랑스)
- 미국
- 호주

□ 조사 범위

- 국내 '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생용품 19종 중 식품 섭취 활동과 관련된 15종*을 조사 범위 대상으로 함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건티슈

□ 조사 항목

- 국가별 위생용품 정의
- 근거 법령
- 안전관리 현황
- 국가별 주요 이슈 : 제도 개선 사항 등

□ 조사 방법 및 기간

- (방법) 해외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료,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기간) '18년 1월~3월

3. 제외국 현황

- 중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은 우리나라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전과 같이 위생용품 종류별로 관리 법규와 제도, 기관이 분산되어 있음
- 국가별로 위생용품 종류별 관리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척제와 식품접촉 물질, 화장품, 일회용품으로 크게 구분 관리하고 있음. 국가별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요약 (상세사항 각 국가별 설명자료 참조)

국 가	위생용품 종류	근거 법규	관리 기관	관리 현황
중 국	· 일회용 위생용품 (물티슈, 냅킨, 종이식기류)	· 소독관리방법	·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 (생산허가) 절차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여 생산허가를 받아야 생산에 종사 가능 · (기준규격) 종류별로 강제성, 권고성 국가표준을 두어 위생지표, 기술지표, 표시 등 관리
	· 식품관련제품 (세척제, 일회용 플라스틱식기류)	· 식품안전법	·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생산허가) 절차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 생산허가를 받아야 생산에 종사 가능 · (기준규격) 종류별로 강제성, 권고성 국가표준을 두어 위생지표, 기술지표, 표시 등 관리
대 만	· 식품용 세척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식품약물관리서	·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액체상태 세척제에만 적용 (식기자동세척기용 세척제 제외) · 주요 소독성분 규정에 근거한 잔류농도 제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및 관련 표준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 일회용 식기 (컵,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식품약물관리서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 표준에 근거한 재질별 규제관리 · 상기 위생표준 및 별도 표시 관련 규정 준수
	· 일회용 젓가락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상품표시법	· 식품약물관리서 · 경제부	· 일회용 젓가락 위생표준에 따라 이산화황 잔류량 등 규제관리 기준 마련 · 식품약물관리서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상품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국 가	위생용품 종류	근거 법규	관리 기관	관리 현황
	· 일회용 종이냅킨	· 상품검사법 · 상품표시법	· 경제부	· 상품검사법에 근거하여 경제부에서 마련한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 ·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상품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 일회용 이쑤시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상품검사법 · 상품표시법	· 식품약품관리서 · 경제부	· 식품섭취용의 경우, 일회용 식기로 간주하여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규제관리하며, 청결용품일 경우 경제부에서 규제관리 ·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상품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 일회용 타월	· 상품검사법 · 상품표시법	· 경제부	· 키친타월과 핸드타월로 구분하여 경제부에서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규제관리 ·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상품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일 본	· 일회용품(종이냅킨 포함), 세척제	· 일본 식품위생법 ·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 후생노동성	· 규격기준에 일회용품은 재질별 규격기준을, 세척제는 규격기준을 정해두고 관리
	· 위생물수건, 일회용 젓가락	-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 통지문을 통해 각 도도부현에서 관리 · 위생물수건은 위생기준, 일회용 젓가락은 검사 항목별 검출 한도치를 두어 관리
	· 물티슈	-	-	· 정부 차원의 관리 현황은 확인불가 · 업계 단체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서 자주기준을 두고, 제조·품질·제조 관리
유럽연합	· 세척제	· 세척제 관련 유럽 규정 No 648/2004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시장출시 기준(표시, 사용제한 등)

국 가	위생용품 종류	근거 법규	관리 기관	관리 현황
	· 행굼보조제	· 유럽화학물질법령 (REACH, CLP, 살생물제 규정 등)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사용가능/불가 원료 목록 적용 · 유럽 일반소비자제품 긴급 통보시스템 (RAPEX) 운영(부적합 제품 통보)
	· 식품접촉물질 (일회용 식기류, 종이냅킨 등)	· 식품접촉물질 관련 유럽 규정 No 1935/2004 ·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유럽 규정 No 10/2011 등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유럽식품안전청(평가)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표시 기준(용도, 영업자정보, 주의사항 등) · 승인된 물질에 한해 사용 기준에 따라 제품 제조에 사용 가능 · 유럽 식품 사료 긴급 통보 시스템 (RASFF) 운영(부적합 제품 통보)
	·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등	· 화장품 관련 규정 No 1223/2009 · 유럽화학물질법령 (REACH, CLP, 살생물제 규정 등)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시장출시 기준(표시, 사용제한 등) · 사용가능/불가 원료 목록 적용 · 유럽 일반소비자제품 긴급 통보시스템 (RAPEX) 운영(부적합 제품 통보)
	· 기타(특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	· 일반제품안전에 관한 유럽 지침 2001/95/EC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영업자 의무(소비자 정보제공, 위해예방조치 실시 등) 명시 · 유럽 일반소비자제품 긴급 통보시스템 (RAPEX) 운영(부적합 제품 통보)
독 일	· 식품접촉물질 · 기타 생활용품	· 관련 유럽규정 · 독일 식품사료법(LFGB) · 독일 제품안전법(ProdSG) · 독일 화학물질관련 규정 등	· 연방식품농업부(BMEL) · 주정부 식품감시당국	· 유럽규정에 따른 일반적 사항(적합성 증명, 표시사항, 금지 성분 등) 검사 · 독일 '생활용품령'에 특정 성분 금지 및 금지 성분 검사
프랑스	· 세척제 · 식품접촉물질 등	· 관련 유럽규정 · 프랑스 소비자법전	·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 수자원생물다양성국(DGALN)	· 유럽연합의 관리 체계를 따르며 일부 식품접촉물질은 자국 규정으로 별도 관리 · (적합성 증명) 식품접촉물질 원료 공급자는 실험실에서 발부한 적합성 증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적합성을 보장

국 가	위생용품 종류	근거 법규	관리 기관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건 설정) 물질의 규격 및 요건을 규정 · (표시) 유럽 규정에 따라 '식품 접촉용'임을 명시
미 국	· 세척제	·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미국 식품의약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승인 관리 · 성분의 기준규격 및 표시
	· 행금보조제	·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미국 식품의약품청	· 성분 신고 관리
	· 일회용품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이쑤시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식품의약품청 · 주정부 식품접객업소 관할기관 	· 식품영업장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의 취급 등에 관한 위생 관리
	· 일회용 종이냅킨, 행주, 타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청 관리 대상*에서 제외 * 닦기(wiping) 용도로만 판매하는 지류 제품(종이 타월·냅킨 등) 한정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위생 물수건	·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 미국 식품의약품청	· 시설 및 원료의 자율 등록 관리
호 주	· 세척제 및 가공보조제	·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 성분허가제
	· 일회용품	·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규격제정) · 주·준주 식품안전 담당기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위생 관리 · 재질별(플라스틱, 위생지) 업체자율 기준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위생 물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 ·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NICNAS)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허가제 · 사업자 및 제품 등록 ·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 전성분 표시

제2장 국가별 현황

I

중 국

1. 일반 현황

-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종이냅킨, 물티슈, 1회용 종이 식기류를 '소독제품(1회용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1회용 플라스틱식기류, 나무젓가락, 세척제류를 '공업제품(식품관련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1회용 위생용품	식품관련제품
관리기관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NHFPC)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관리근거	「소독관리방법」	「식품안전법」

- 1회용 위생용품은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관련제품은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생산할 수 있으며, 종류별로 기준규격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표 I-1> 중국 위생용품 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중국		
	정의	관리 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	질검총국	• 생산허가 - 식품관련제품 : 생산 허가증 취득 - 1회용 위생용품 : 위생허가증 취득 • 기준규격 관리
행금보조제	(식품관련제품에 포함)		
일회용 컵	- (플라스틱류는 식품관련제품, 종이류는 1회용 위생용품에 포함)	(플라스틱류) 질검총국 (종이류)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위생용품에 포함)		

* 일회용 이쑤시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에 대한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2. 위생용품의 정의

○ 위생용품의 분류

- (위생용품) 소독제품 분류 목록에 따르면, 소독제품에는 위생용품, 소독제, 소독 기기, 1회용 의료용품이 포함되고, 위생용품에는 '기타 1회용 위생용품', '여성월경 위생용품', '기저귀 등 배설물 위생용품', '피부, 점막 위생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 포함됨
- (식품관련제품) 우리나라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척제',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1회용 나무젓가락'은 중국에서 공업제품(식품관련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I-2> 중국 위생용품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독제품	위생용품	(1회용 위생용품) 물티슈, 종이냅킨, 종이식기류 등
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세척제) 식기 및 과일채소 세척제(손세척용, 식기 세척기용 포함), 식품공업용 세척제(기계용, 파이프용, 컨베이어벨트용, 용기용, 도구용 세척제 포함)
		(플라스틱제품)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젓가락, 나이프, 포크, 숟가락, 빨대, 젤리컵, 요거트컵 등 포함) (나무제품)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위생용품의 정의¹⁾

- (정의) 1회 사용 후 버리는 것으로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인체 생리적 위생 또는 위생 보건(항균 또는 세균번식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일상생활용품, 제품 성상은 고체, 액체 모두 가능
- (예시) 1회용 장갑 또는 핑거커버(의료용 장갑 또는 핑거커버 제외), 냅킨, 물티슈, 위생물티슈, 휴대폰(액정)필름, 모자, 마스크, 팬티, 여성월경 위생용품(위생패드 포함), 기저귀 등 배설물 위생용품(주름화장지 등 화장실용 제외) 등

1) 식품화반넷(1회용 위생용품 위생표준)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650.html>)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표 I-3> 중국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소독제품 (위생용품)	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관리기관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NHFPC)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관리근거	「소독관리방법」	「식품안전법」

○ 관리기관

- (위생용품)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에서 전국 소독 감독관리를 주관하며, 현급(縣級) 이상 위생및가족계획 행정당국이 소독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감독직권을 행사함
 - 관련 기구(기관), 장소, 물품의 소독업무에 대해 감독조사 진행
 - 소독제품생산기업에 대한 「소독제품생산기업 위생규범」 집행상황 감독조사 진행
 - 소독제품의 위생 품질에 대한 감독조사 진행
 - 소독서비스기구의 소독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조사 진행
 - 「소독관리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통제조치 및 행정처벌
- (식품관련제품)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식품관련제품의 생산 및 가공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현급 이상 품질감독당국에서 식품관련제품 샘플검사를 담당함

○ 관련 법령

소독제품 (위생용품)	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소독관리방법」	「식품안전법」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 규범」	「제품품질법」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규정」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소독제품 위생감독 업무규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소독제품 라벨 설명서 관리 규범」 등	「식품용 포장,용기,기구 등 제품 생산허가 통칙」 등

4. 위생용품 관리체계

(1) 생산(제조) 관리

□ 소독제품(위생용품) : 위생허가증 발급²⁾

○ (근거규정) 「소독관리방법」 제20조

「소독관리방법」 제20조

소독제, 소독기기, 위생용품 생산기업은 공상행정관리당국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소재지 성급 위생및가족계획 행정당국에서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소독제품의 생산에 종사할 수 있음

- (적용) 중국 내에서 소독제품의 생산, 소분포장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허가절차) 신청(서류제출) → 신청수리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허가여부결정 → 위생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거부
 - 신청 : 생산허가증 신청인은 생산장소 소재지 성급 위생행정당국에 다음 서류를 제출
 -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신청표
 - 공상영업허가증 복사본 또는 기업명칭 사전승인 통지서
 - 생산장소 사용 증명(부동산 소유권 증명 또는 임대 협의서)
 - 생산장소 공장구역 평면도, 생산작업장 배치 평면도
 - 생산공정 흐름도
 - 생산 및 검사 설비 목록
 - 품질보증체계문건
 - 생산하고자하는 제품 목록
 - 생산환경과 생산용수 검사보고서
 - 성급 위생행정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서류심사 : 신청 수리 후 성급 위생행정당국이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 진행
 - 현장조사 : 성급 위생행정당국은 2명 이상의 위생감독원을 파견하거나 하급 위생행정당국에 위탁하여, 생산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2)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규정)
(<http://www.nhfpc.gov.cn/zhjcj/s9139/200911/f48ffc3a755a4692a0dd01ff1a8b0b23.shtml>)

- 허가여부결정 : 생산장소가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 규범」 요건에 부합하고 신청서류가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위생허가를 승인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되돌려줌
 - *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 규범 : 공장구역 환경과 구성(분포), 생산구역의 위생 요구, 설비 요구, 자재와 창고 요구, 위생 품질 관리, 인원(인력) 요구 등을 규정
- 위생허가증 발급

유효기한	4년 (유효기한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
허가증번호	(성, 자치구, 직할시 약칭) 위소증자(衛消证字) (발행연도) 제XXXX호
기재내용	업체명칭, 법정대표인(책임자), 등록지주소, 생산지주소, 생산방식, 생산항목, 생산유형, 유효기한, 승인일자, 증서번호 등
기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칭, 법정대표인(책임자), 등록지주소는 공상당국에서 승인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생산방식은 생산, 소분포장으로 기입 - 생산항목은 위생용품, 소독제, 소독기계로 기입 - 생산유형은 '생산유형 분류 목록'에 따라 기입하고, 구체적인 제품 명칭은 기입하지 말 것

□ **공업제품(식품관련제품) : 생산허가증 발급³⁾⁴⁾**

○ (근거규정) 「식품안전법」 제41조

「식품안전법」 제41조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은 법률, 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등 비교적 고위험 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국가 관련 공업 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함. 품질감독관리당국은 반드시 식품관련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함

○ (적용) '식품관련제품 생산허가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함

- * 식품관련제품 생산허가증 목록에서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유형은 '세척제류'와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임(베이징시 품질기술감독국 자료 참고⁵⁾)

3) 중국 식약총국(식기세척제제품 생산허가 실시세칙) (<http://www.sda.gov.cn/WS01/CL1619/91132.html>)

4) 중국 상하이 품질기술감독국(식품용 포장, 용기, 도구 등 제품 생산허가 통칙) (http://www.shzj.gov.cn/art/2007/9/21/art_1687_3434.html)

5) 베이징시 품질기술감독국 (<http://www.bjtsb.gov.cn/infoview.asp?ViewID=5894>)

○ (허가절차) 신청(서류제출) → 신청수리(서류심사) → 시험생산 → 기업심사(현장 조사, 제품검사) → 허가여부결정 → 생산허가증 발급 또는 발급거부

- 신청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추고 생산허가를 신청해야 함

- 생산 또는 가공을 신청하는 제품에 해당되는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함
- 생산을 신청하는 제품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인력, 생산조건과 검사수단, 기술문건과 공정문건이 있어야 함
- 완전하고 효과적인 기업품질관리제도와 제품품질책임제도를 갖춰야 함
- 제품 품질은 국가표준, 업계표준, 인체건강과 신체, 재산안전 보장 요건에 부합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에서 도태, 투자건설금지를 명령한 낙후된 공정,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법률, 행정법규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 제출서류 :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세척제류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식기세척제 제품 생산허가 신청서	식품용 포장, 용기, 도구 등 제품 생산허가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신청시 원본 휴대)
현지 환경보호당국에서 발급한, 요구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건 사본(신청시 원본 휴대) 기업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원부재료가 국가법률·법규 및 강제성표준 규정, 안전 위생요구에 부합한다는 “기업자아성명(企業自我聲明)”	기업생산관리제도 목록
기업조직기구코드증 사본(신청시 원본 휴대)	-
-	기업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의 종류가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 반드시 안전평가기구에서 발급한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품형식검사보고서(기업현장조사 시 제출 가능)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제품라벨 (제품의 최소포장에 사용) * 제품명칭, 성능, 용도, 주요 유효성분, 사용 방법, 주의사항(필요시 안전경고 표시), 집행표준, 생산허가증 마크와 일련번호(최초 신청시 제외), 순합량, 생산일자와 품질유지기한(또는 로트번호와 기한내 사용일자), 생산자 명칭, 주소, 우편번호 등 문자, 도식, 경고내용(식기세척기용 제품에는 “식기세척기에 적용” 등 반드시 표시) 포함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제품라벨 * 제품사용방법, 사용주의사항, 용도, 제품사용 환경, 사용온도, 사용하는 원부재료 유형 등 문자, 도식, 경고내용 포함
법률, 법규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타 자료	제품심사세척 중 보충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타 자료

- 시험생산 : 신청기업이 '행정허가신청 수리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허가를 신청한 제품에 대해 소량 시험생산을 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한 제품은 공인검사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합격하면 포장 또는 설명서 상에 "시제품" 표시 후 판매할 수 있음
- 현장조사 : 일반적으로 2~4명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1~3일간 현장조사를 진행
- 제품검사 : 기업이 현장조사에 합격한 경우, 심사팀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샘플채취 및 봉인하고, 기업에게 제품검사기구 명단과 연락처를 고지하여 기업이 샘플 봉인날로부터 7일 내에 샘플을 검사기구에 보내 검사하도록 고지함
- 허가여부결정 : 생산을 허가할 경우, 허가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에 생산허가증서(정, 부분)를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에 '행정 불허가 결정서'를 발급함
- 생산허가증 발급

허가증번호	(세척제류)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XK ××-××××-×××××	QS ×× ××××× ×××××
허가마크	생산허가마크는 영문 Quality Safety의 앞글자 QS와 중문 質量安全(품질안전)으로 구성	
유효기한	3년 (유효기한 만료 6개월 전, 연장 신청)	
기재내용	기업명칭, 주소, 생산지주소, 제품명칭, 증서 일련번호, 발급일자, 유효일자	

(2) 표시(라벨 및 설명서) 기본 요건

□ 소독제품(위생용품)⁶⁾

- (표시요건) 소독제품 라벨과 설명서에 표시되는 내용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허위과대, 질병치료작용 및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함
 - 반드시 중문표시가 있어야 하고, 외국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제품명칭은 「위생부 건강 관련 제품 명명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반드시 상표명(또는 브랜드명), 통용명, 속성명이 포함되어야 함(여러 종류의 소독 또는 항균(세균억제)용도 또는 여러 종류의 유효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독제품은 명명 시 상표명(또는 브랜드명)과 속성명만 표시할 수 있음)

6) 중국 인민정부(소독제품 라벨 설명서 관리규범)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401219.htm)

- 위생용품의 주요 유효성분 함량은 반드시 제품 집행표준(적용표준)에서 규정한 범위에 부합해야 함
 - 제품에 표시한 집행표준(적용표준)은 반드시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관련 규범에 부합해야 함. 국산제품에 표시된 기업표준은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함
 - 표시된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번호는 반드시 실제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번호와 일치해야 함
- (포장라벨 표시사항) 위생용품 포장라벨(최소판매포장 제외)에 다음 사항을 표시
- 제품명칭
 - 생산기업(명칭, 주소)
 - 생산기업 위생허가증번호(수입제품 제외)
 - 원산국 또는 지역 명칭(국산제품 제외)
 - 제품특성에 부합하는 보관조건
 - 생산일자, 품질유지기한/생산로트번호, 기한내 사용일자
 - 소독급 위생용품*에는 반드시 '소독급(消毒級)' 표시, 소독방법, 소독로트번호/소독일자, 유효기한/기한내 사용일자
 - * 소독급 위생용품 : 산화에틸렌, 이온화 방사선, 압력증기 등 소독방법으로 처리하고 “1회용 위생용품 위생표준(GB 15979)”에서 규정한 소독급 요구에 부합하는 위생용품
- (최소판매포장 라벨 표시사항) 위생용품 최소판매포장 라벨에 다음 사항을 표시
- 제품명칭
 - 주요원료 명칭
 - 생산기업(명칭,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 생산기업 위생허가증번호(수입제품 제외)
 - 원산국 또는 지역 명칭(국산제품 제외)
 - 생산일자, 유효기한(품질유지기한)/생산로트번호, 기한내 사용일자
 - 소독급 제품은 반드시 '소독급(消毒級)' 표시
 - 위생물티슈는 반드시 살균유효성분과 그 함량, 사용방법, 사용범위, 주의사항 표시

□ 식품관련제품

- (세척제류)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포장 라벨의 표시사항⁷⁾
 - 제품명칭, 성능, 용도, 주요 유효성분, 사용방법, 주의사항(필요시 안전경고 표시), 집행표준, 생산허가증 마크와 일련번호, 순함량, 생산일자와 품질유지기한(또는 로트번호와 기한내 사용일자), 생산자 명칭, 주소, 우편번호 등 문자, 도식, 경고내용
 - 식기세척기용 제품에는 ‘식기세척기에 적용’ 등 반드시 표시
-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라벨의 표시사항⁸⁾
 - 제품포장 또는 라벨 상에 ‘식품용’ 반드시 표시
 - 생산허가증 마크(QS마크)
 - 사용방법, 사용주의사항, 용도, 사용환경, 사용온도, 주요 원부재료 명칭 등 문자, 도식, 경고내용
 - ‘내고온(내열)’, ‘조리 가능’, ‘전자레인지 사용’ 표시한 경우, 기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근거 제공해야 함

(3) 기준규격(식품안전국가표준)

<표 I-4> 중국 위생용품 관련 기준규격(식품안전국가표준)

구분	관련 표준
1회용 위생용품 (물티슈, 냅킨 등)	GB 15979-2002 1회용 위생용품 위생 표준 GB/T 27728-2011 물티슈 GB/T 20808-2011 화장지
1회용 종이식기류 (종이컵 등)	GB/T 27590-2011 종이컵 GB 4806.8-2016 식품접촉용 종이와 판지재료 및 제품
키친타월	GB/T 26174-2010 키친타월
세척제	GB 14930.1-2015 세척제 GB/T 9985-2000 손세척용 식기 세척제
1회용 플라스틱식기류 (젓가락, 나이프, 포크, 숟가락, 빨대 등)	GB/T 18006.1-2009 1회용 플라스틱 식기 통용 기술 요구 GB 4806.7-2016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GB/T 24693-2009 폴리프로필렌 음용 빨대
1회용 나무젓가락	GB/T 19790.1-2005 1회용 젓가락 - 제1부분:나무젓가락 GB/T 19790.2-2005 1회용 젓가락 - 제2부분:대나무젓가락
이쑤시개	LY/T 1159-2006 나무 이쑤시개

7) 중국 식약총국(식기세척제제품 생산허가 실시세칙) (<http://www.sda.gov.cn/WS01/CL1619/91132.html>)

8) 중국 식품화반넷(식품용 합성수지 포장, 용기, 도구 등 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 (<http://www.foodmate.net/law/shipin/163638.html>)

□ 1회용 위생용품

○ 1회용 위생용품

- (관련표준) GB 15979-2002 1회용 위생용품 위생 표준⁹⁾
 - (적용대상) 1회용 위생용품(1회 사용 후 버리는 것으로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인체 생리적 위생 또는 위생 보건(항균 또는 세균번식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일상생활용품)
 - (관리기준) 제품 및 생산환경 위생지표*, 소독효과 생물감시평가표준, 검사방법, 원재료 및 제품생산·소독·포장·운송·보관과정 위생요구, 제품표시 요구 등
- * 제품 위생지표에 넵킨, 물티슈의 세균 균락총수, 대장균군, 병원성 화농균, 진균 균락총수 등 미생물 기준 포함

○ 물티슈

- (관련표준) GB/T 27728-2011 물티슈¹⁰⁾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부직포, 에어레이드 페이퍼(Airlaid Paper) 또는 기타 원료로 제조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티슈
- * 물티슈는 인체용과 물체용으로 구분하는데, 인체용 물티슈에는 일반 물티슈와 위생 물티슈가 포함되고, 물체용 물티슈에는 주방용 물티슈, 화장실용 물티슈, 기타 용도의 물티슈가 포함됨
- (관리기준) 기술지표(편차(길이, 너비), 액체함유량, 가로인장강도, 포장밀봉성능, pH, 세정력, 부식성, 형광증백제, 먼지정도 등), 내장량,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 운송·보관 등
- * 인체용 물티슈의 위생지표와 물체용 물티슈의 미생물 지표는 GB15979(1회용 위생용품 위생 표준)를 따르라고 규정

○ 넵킨

- (관련표준) GB/T 20808-2011 화장지¹¹⁾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티슈, 넵킨 등(물티슈, 핸드타월, 키친타월 제외)
- (관리기준) 기술지표(정량, 밝기(하얀정도), 형광증백제, 회분(목질섬유, 비목질섬유), 가로흡수지표, 가로인장지수, 세로습인장강도, 먼지정도 등), 내장량,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 운송·보관 등

9) 식품화반넷(1회용 위생용품 위생 표준)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650.html>)

10) 식품화반넷(물티슈)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7725.html>)

11) 식품화반넷(넵킨)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0294.html>)

□ 1회용 종이식기류

○ 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

- (관련표준) GB 4806.8-2016 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¹²⁾
- (적용대상) 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재생섬유소박막(셀로판지)제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제외)
 - * 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의 정의 : 정상적인 또는 예견할 수 있는 사용조건 하에서 식품과 접촉이 예상되는 각종 종지와 종이판지재료 및 제품
- (관리기준) 원료요구, 관능요구, 이화학적 지표(납, 비소, 포름알데히드, 형광물질, 총이행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중금속(Pb로 계산)), 미생물(대장균군, 살모넬라균, 곰팡이), 첨가물, 이행실험, 라벨표시 등

○ 종이컵

- (관련표준) GB/T 27590-2011 종이컵¹³⁾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표면이 파라핀, PE막 등 물질로 덮여있는 냉·열음료, 아이스크림을 담는데 사용하는 각종 종이컵
- (관리기준) 관능지표, 용량 및 용량편차, 물리적 성능(누수성능, 강도), 위생지표*, 원재료,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 * 위생지표 중 중금속, 형광물질, 탈색실험, 미생물 지표는 GB 4806.8-2016(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을 따르고, 증발잔류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GB 4806.7-2016(식품접촉용 합성수지재료 및 제품)을 따르라고 규정

□ 키친타월

- (관련표준) GB/T 26174-2010 키친타월¹⁴⁾ (권고성 업계표준)
- (적용대상) 청결용 키친타월
- (관리기준) 기술요구(정량, 밝기(하얀정도), 가로흡수고도, 가로인장지표, 세로습인장지표, 먼지정도 등), 미생물 지표(세균균락총수, 대장균군, 병원성 화농균, 진균균락총수),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 운송·보관 등

12) 식품화반넷(식품접촉용 종지와 판지재료 및 제품)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9850.html>)

13) 식품화반넷(종이컵)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0092.html>)

14) 식품화반넷(키친타월)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714.html>)

□ 세척제

○ 세척제

- (관련표준) GB 14930.1-2015 세척제¹⁵⁾
- (적용대상) 식품용 세척제*
 - * 식품용 세척제의 정의 : 식품, 식기구,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용기, 식품포장재료를 세척하고 깨끗이 하는 물질로서 ‘식품을 깨끗이 씻는데 직접 사용하는 세척제’와 ‘식기구,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설비, 용기, 식품포장재료를 깨끗이 씻는 세척제’로 구분
- (관리기준) 원료요구(기본요구, 계면활성제, 방부제, 착색제, 향료), 이화학적 지표(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와 메틸알코올 함량), 미생물 제한량(균락총수, 대장균군), 표시 등

○ 손세척용 식기 세척제(Hand dishwashing)

- (관련표준) GB/T 9985-2000 손세척용 식기 세척제¹⁶⁾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계면활성제와 보조제 등을 배합 생산한 손세척용 식기세척제
- (관리기준) 재료요구, 관능지표, 이화학적 지표(총활성물 함량, pH, 세정력, 형광 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메틸알코올, 비소, 중금속), 미생물 지표(균락총수, 대장균), 정량포장요구,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 1회용 플라스틱식기류

○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 (관련표준) GB 4806.7-2016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¹⁷⁾
- (적용대상)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으로 황화(硫化)를 거치지 않은 열가소성 탄성체(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재료 및 제품을 포함
- (관리기준) 원료요구, 관능요구, 이화학적 지표(총이행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중금속(Pb로 계산), 탈색실험), 첨가물, 이행실험, 라벨표시 등

○ 1회용 플라스틱 식기

- (관련표준) GB/T 18006.1-2009 1회용 플라스틱 식기 통용 기술 요구¹⁸⁾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각종 열가소성재료로 제조된 1회용 식기류
- (관리기준) 원료, 첨가물, 관능, 사용성능, 흡수량, 생물분해성능, 전분함량, 위생·이화학적 지표, 미생물 지표, 검사방법, 검사규정,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15) 식품화반넷(세척제)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8018.html>)

16) 식품화반넷(손세척용 식기 세척제)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6456.html>)

17) 식품화반넷(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9849.html>)

18) 식품화반넷(플라스틱 식기 통용 기술 요구)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18883.html>)

□ 1회용 나무젓가락

○ 나무젓가락

- (관련표준) GB/T 19790.1-2005 1회용 젓가락 - 제1부분:나무젓가락¹⁹⁾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자작나무, 백양나무, 마미송(중국산 소나무의 일종),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한 1회용 나무젓가락
- (관리기준) 1회용 나무젓가락의 제품유형, 기술요구(관능요구, 등급구분, 1회용 나무젓가락 재질결함요구, 가공품질요구, 미생물지표(대장균군, 병원균, 곰팡이), 이화학적 지표(합수율, 이산화황 침출량)), 검사규정,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 대나무 젓가락

- (관련표준) GB/T 19790.2-2005 1회용 젓가락 - 제2부분:대나무젓가락²⁰⁾ (권고성 국가표준)
- (적용대상) 대나무를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한 1회용 대나무젓가락
- (관리기준) 1회용 대나무젓가락의 제품유형, 일반요구(관능요구, 미생물지표, 이화학적 지표), 검사규정,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 이쭉시개

- (관련표준) LY/T 1159-2006 나무 이쭉시개²¹⁾ (권고성 업계표준)
- (적용대상) 목재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이를 쭉시거나 식품용인 이쭉시개
- (관리기준) 나무 이쭉시개의 적용 수종(나무종류), 제품유형, 규격(길이와 편차), 외관 품질, 합수율, 위생지표(관능지표, 미생물지표(대장균군, 병원균, 곰팡이)*, 검사(검사방법, 검사결과), 표시·포장·운송·보관 등

* 동 표준은 권고성 표준이나 표준 중 '미생물 지표'는 강제성 조항임

19) 식품화반넷(1회용 젓가락 - 제1부분:나무젓가락)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7119.html>)

20) 식품화반넷(1회용 젓가락 - 제2부분:대나무젓가락)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7817.html>)

21) 식품화반넷(나무 이쭉시개)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9/13869.html>)

5. 최근 동향 및 이슈

○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 금지 제안²²⁾

-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홍콩각계문화촉진회(Hong Kong Culture Association) 상무부회장 쑹메이윈(邝美云)이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회용 식기류의 점진적 사용 금지를 제안하는 건의안 제출
- 건의안의 주요 내용
 - 국가 정책 상 더욱 엄격한 '1회용 플라스틱용품 산업 도태 목록' 제정
 - 국가가 1회용 식기 및 1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는 도시를 표장·장려하고 1회용 식기 및 1회용품의 점진적 감소 또는 사용금지 정책 유무를 위생도시 등 심사지표로서 활용
 - 국가 관련 당국에서 기업의 1회용 식기 및 1회용품 사용저감·금지 장려정책을 제정하고, 각 사회조직기구에서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 포함시켜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표창
 - 국가 교육부, 환경보호부, 전국청년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대학교의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1회용품 사용금지를 제안하고,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환경보호 분위기 조성 선도

22) 식품화반넷 (<http://news.foodmate.net/2018/03/461990.html>)

II

대 만

1. 일반 현황

- 법률상으로 위생용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 및 식품 접촉과 관련된 식기, 세척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²³⁾에 근거하여 관리함
 -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정의에 대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는 제품의 실제 용도 및 형태에 따라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 제품에 해당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식품의 위생관리’, ‘식품의 표시 및 광고 관리’,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관련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그 외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제품의 경우 경제부에서 관리하며, 경제부 검사표준국에서 마련한 관련 “국가표준(CNS)”에 근거하여 제품을 검사함
 - * 국가표준(CNS) : 자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나 각 사업 주무 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법규로 인용한 경우, 규정으로 따라야 함²⁴⁾
 -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 관리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²⁵⁾에 근거함²⁶⁾

<표 II-1> 대만 위생용품 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대만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을 소독하거나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단, 상업멸균용도 식품용 세척제 제외	식품약품관리서	· 위생표준 · 표시
행굼보조제	-	-	-

23)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

24) 대만 법무부(<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100044>)

25) 대만 법무부(<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080011>)

26) 대만 식품약품관리서(<https://www.fda.gov.tw>)(*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표시 Q&A)

위생용품 종류	대만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일회용 컵	-	식품약물관리서	· 위생표준 · 표시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대나무 또는 나무를 원료로 가공하여 제조한 후 세척하지 않고 즉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일회성으로 사용	식품약물관리서, 경제부	· 위생표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 표시(상품표시법)
일회용 포크	-	식품약물관리서	· 위생표준 · 표시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일회용 종이냅킨	-	경제부	· 품질표준 · 표시
일회용 이쑤시개	-	식품약물관리서, 경제부	· 위생표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품검사법 ²⁷⁾) · 표시(상품표시법)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
위생물수건	-	-	-
일회용 행주	-	-	-
일회용 타월	-	경제부	· 품질표준 · 표시

(출처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품표시법 등)

27) 대만 경제부(<https://www.bsmi.gov.tw/wSite/laws/review.jsp?lawId=2c9081fe1c6f9f4c011c730919d800b1>)

2. 위생용품의 정의

- 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 중 식품 및 식품 접촉과 관련된 기기, 도구, 그릇, 세척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과 각각의 위생용품 관련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음
 - (식품용 세척제) 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용 소독하거나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단, 상업멸균용도의 식품용 세척제는 제외
 - (식기세척기용 세척제)²⁸⁾
 - (세정제) 식기의 지방, 단백질 등을 제거함. 보통 액체, 분말, 유화 및 고체 상태 등으로 분류하며, 각7종 세척기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세제를 선택함. 단, 식품 위생표준 적합성 여부, 포장견고성, 보관 편의성, 사용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건조제) 친수성 기반의 극성이 높은 원자단임. 식기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통제하여 물방울을 수막으로 바꿔 고온에서 신속하게 증발하도록 함으로써 식기 건조 기능을 함. 시중에서 액체 또는 분말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휘발 건조 효과 여부에 유의해야 함
 - (소독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기세척기 대부분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저온 식기세척기임. 염소가 함유된 소독제를 첨가하여 살균 효과를 높임
 - (일회용 젓가락) 대나무 또는 나무를 원료로 가공하여 제조한 후 세척하지 않고 즉시 사용 가능한 젓가락으로, 일회성으로 사용함
- 그 외 우리나라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확인되지 않음

28) 대만 식품약품관리서(<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179>)(* 식기의 세척 Q&A)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 관리 기관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 “식품위생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²⁹⁾에 따라 일회용 식기류(나이프,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젓가락, 식품용 세척제(식기세척기용 세척제 제외)를 관리함

○ 경제부

- “상품검사법”에 근거해 경제부 표준검사국에서 마련한 “국가표준(CNS)”에 따라 이쑤시개(기구식 개인 청결용품), 일반 물티슈 등을 일반 상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 관리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에 근거함

□ 관련 법령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위생 관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세척자가 유독하거나 불량 화학작용이 쉽게 발생하는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해서는 안됨. 또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세척제는 관련 위생안전 및 품질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은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정함
- (표시 관리)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 중문과 통용 부호로 제품명, 재질명, 원산지, 제조일자,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검사 방법) 각급 주무기관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세척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마련함.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검사함
- (기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세척제 관련 업체 등록, 수입 관리, 조사 및 규제관리,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9)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07&k=%u5305%u88DD>)

○ 상품검사법

- (검사 기관) 경제부 내 표준검사국에서 상품 검사 시행
- (검사 대상) 표준검사국에서 지정 공고한 종류, 품목 또는 수출입국(지역)인 경우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국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농·공·광산 상품
 - 해외 수출용 농·공·광산 상품
 - 국내 수입용 농·공·광산 상품
- (검사 내용) 검사 항목과 검사표준은 표준검사국에서 공고함
 - 검사표준은 국제협약에서 언급한 의무사항에 근거하고 국가표준, 국제표준 또는 기타 기술법규를 참고하여 마련함
- (기타) 상품의 검사 방식, 검증 등록, 시장 모니터링,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상품표시법

- (주무 기관) 중앙 주무기관은 경제부이며,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는 현(시) 정부임
- (수입 상품) 수입 업체는 증문표시와 설명서를 표기해야 하며, 그 내용이 원산지의 표시와 설명서보다 간략해서는 안됨
- (표시 사항) 생산, 제조, 수입업체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 제품명
 - 생산,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상품 원산지(수입상품의 경우, 수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표기)
 - 상품 내용 : 주요 성분 또는 재료, 순중량, 수량 등
 - 제조일자(시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일자 표기)
 - 위험성이 있거나 위생안전과 관련된 경우, 또는 특수 성질이나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용도, 사용, 보관방법,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 기타 중앙 주무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
- (표시 관리) 직할시 또는 현(시) 주무기관은 유통 상품에 대해 비정기적인 샘플 검사를 실시하며, 위반 정황 발견 시 생산,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기한 내 시정을 통지함

<표 II-2> 종류별 관련 법령 및 관리 기관

종류	근거 법령	관련 법령	관리 기관
식품용 세척제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 (참고) 국가표준 CNS3800 식품 및 식기용 합성 청결제 ³⁰⁾	식품약품관리서
일회용 식기류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	
일회용 젓가락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상품표시법	일회용 젓가락 위생표준 * (참고) 국가표준(CNS 15128) 폐기식 일회용 위생저 ³¹⁾	식품약품관리서, 경제부
냅킨	상품검사법, 상품표시법	국가표준(CNS 2386) 냇킨 ³²⁾	경제부
일회용 이쑤시개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	식품약품관리서
	상품검사법, 상품표시법	-	경제부
일회용 타월	상품검사법, 상품표시법	국가표준(CNS14392) 주방용 종이 키친타월, 국가표준(CNS14836) 종이 핸드타월	경제부

(출처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품검사법 등)

30)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유료제공 사이트, 食品及食具用合成清潔劑 (Synthetic detergent for food and kitchen utensil) 검색)

31)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유료제공 사이트, 拋棄式免洗衛生筷(Disposable sanitary chopsticks) 검색)

32)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유료제공 사이트, 紙餐巾(Paper napkin) 검색)

4. 위생용품 관리체계

(1) 위생안전 관리

□ 식품용 세척제

- (주무 기관) 식품약품관리서
- (적용 대상)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액체상태 세척제에만 적용하며, 식기자동세척기에 사용하는 세척제에는 적용하지 않음³³⁾
 - 소독류 및 세정류 제품 포함
 - * (예) 채소 및 과일 또는 식품접촉면에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소독류 식품용 세척제이며, ‘주방세제’ 등은 세정류 식품용 세척제에 해당
 - 자동 식기세척기 전용 세척제는 계면활성제 외에 기타 오염 재발 방지 또는 휘발성 성분이 별도로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

<표 II-4 식품용 세척제의 위생 및 품질표준>

관련 표준	항목	위생 표준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비소 (As ₂ O ₃ 로 계산)	0.05 ppm이하(제품 표시내용에 따라 희석 후 사용할 때의 용액농도 기준)
	중금속 (Pb로 계산)	1 ppm이하(제품 표시내용에 따라 희석 후 사용할 때의 용액농도 기준)
	포름알데히드	1 mg/mL 이하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0.1%(중량비)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향료 및 착색제	승인된 식품첨가물에 한함
	관련 표준	항목
국가표준 CNS 3800 식품 및 식기용 합성 청결제	계면활성제 함량	15%
	pH값(25도)	표시에 따르며 허용 오차는 ±1
	표면장력	40dyne/cm이하
	생물분해도	90%이상

(출처 :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등)

- 식품용 기구, 용기 및 포장 등 식품접촉면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소독 성분이며 사용 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도 되지 않으면서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첨부표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식품접촉면에 사용하는 주요 소독 성분’³⁴⁾에 열거되어 있는 성분인 경우, 해당 사용 규정에 적합해야 함

33) 대만 식약서(<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9691>)

34)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 식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소독 성분인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첨부표2 ‘식품의 세척에 사용하는 주요 소독성분³⁵⁾에 열거되어 있는 성분인 경우, 해당 사용 규정에 적합해야 함. 해당 표에 나열되어 있는 성분으로, 사용 후 물로 충분히 세척, 세정, 가열하거나 기타 적절한 처리를 또 해야하는 경우, 최종 식품의 잔류농도는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 (주무 기관) 식품약품관리서
 - * 자체적으로 식기를 세척하는 대규모 외식업소나 외식업체에 식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식기 세척 우수작업지침³⁶⁾을 따르도록 함
- (유형) 세정제, 건조제, 소독제로 분류
- (위생 관리) 세척 시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살균제, 건조제는 반드시 식품 위생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함
 - 건조제 처리 시, 섭취 안전성이 있는 건조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안전성 자료는 행정원 위생복지부(구 위생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일회용 컵,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주무 기관) 식품약품관리서
- (위생 관리)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용 기구’(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기기, 도구, 그릇)에 속하므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에 근거하여 위생안전을 관리함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재질 및 용도별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착색제, 일회용 합성수지제 또는 종이제 제품은 해당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일회용 젓가락³⁷⁾

- (주무 기관) 식품약품관리서
- 일회용 젓가락 제품은 관련 위생 안전 및 품질 표준에 적합해야 함

(<http://consumer.fda.gov.tw/DownloadMethod/ashx/downloadFile.ashx?id=7695&type=0>)(*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식품접촉면에 사용하는 주요 소독 성분(중문 및 영문 제공))

35)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18>)(* 식품의 세척에 사용하는 주요 소독 성분(중문 및 영문 제공))

36) 대만 식품약품관리서(<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179>)

37)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17&k=%u7B77%u5B50>)

<표 II-3> 일회용 젓가락 위생 및 품질표준

관련 표준	항목	위생 표준
일회용 젓가락 위생 표준	관능	불량 색상, 이취, 이미, 오염, 곰팡이, 벌레 먹은 흔적, 이물 또는 섬유 박락 문제가 없어야 함
	이산화황 잔류량	500ppm 이하
	과산화수소	불검출
	페닐벤젠	불검출
관련 표준	항목	품질 표준
국가표준 CNS 15128 폐기식 일회용 위생저	수분 함유율	16% 이하
	이산화황	500 ppm 이하
	과산화수소	불검출
	펜타클로로페놀	불검출
	페닐벤젠	불검출
	생균수	100 CFU/g 이하
	대장균군	음성
	병원성 대장균	음성

(출처 : 일회용 젓가락 위생표준 등)

- (기타) 포장의 인쇄면이 젓가락 본체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되며, 포장 재질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 규정에 적합해야 함

□ 냅킨³⁸⁾³⁹⁾

- (주무 기관) 경제부
- (적용 대상) 일반 건식 냅킨
- (위생 표준) 이행 가능한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됨
- (포장) 포장 재료는 눈으로 검사하여 포장비닐 내부 인쇄 부분의 경우, 인쇄잉크가 탈락돼 제품에 이행되는 현상이 없어야 함

□ 일회용 이쑤시개

- (적용 대상) 식품섭취용, 청결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식품섭취용 :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꼬치용으로 제공

38)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 유료 서비스, 紙餐巾(Paper napkin) 검색)

39) 대만 TVBS(<https://news.cts.com.tw/cts/life/201801/201801121908940.html#.WrIT7HUUIQs>)

- 식품약품관리서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표준”에 근거하여 위생안전 관리 실시
 - * 상술한 ‘일회용 컵,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내용 참조
- 청결용품 : 치실, 면봉 등과 같은 기구식 개인 청결용품⁴⁰⁾
 - 경제부에서 2015년 5월부터 ‘기구식 개인 청결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었으나 위생안전 관리와 관련한 기준규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일회용 타월

- (주무 기관) 경제부
- (적용 대상) 키친타월, 핸드타월
 - 키친타월⁴¹⁾ : 펄프 섬유로 제조한 일반 주방용 종이제 타월
 - (원료)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색소, 염료는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품질) 종이면이 깨끗하고 조직인 균일해야 함. 형광물질의 이행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날염 또는 염색을 할 경우 색소 이행 현상이 없어야 함
 - 핸드타월⁴²⁾ : 손을 닦는 종이제 타월
 - (원료)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색소, 염료는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품질) 조직이 균일하고 사용에 방해되는 덩어리와 구멍 등 결함이 없어야 함. 염색을 할 경우 색소의 이행 현상이 없어야 함

□ (참고) 일회용 물티슈⁴³⁾

- (주무 기관) 경제부
- (적용 대상) 인체 피부를 닦는 용도인 일반 물티슈에 적용하며, 영유아 전용, 화장품, 의료용은 제외
 - * (참고) 영유아 전용, 화장품 및 의료용 물티슈는 위생복지부에서 관리
- (품질) 다음의 내용에 적합해야 함

40) 대만 행정원

(https://www.ey.gov.tw/news_Content.aspx?n=49559B255B3B9F27&sms=9101EB18DCFC739&s=080E572BB02C984A)

41)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 유료 서비스, 廚房用紙巾(Paper kitchen towel) 검색)

42)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 유료 서비스, 擦手紙(Paper han towel) 검색)

43) 대만 국가표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s://www.cnsonline.com.tw/>)(* 유료 서비스, 濕巾(Wet wipes) 검색)

<표 II-4> 일회용 물티슈 품질표준

항목	내용
색상	백색, 유색, 날염 등 3종이 있으며, 유색 및 날염 제품인 경우 색상 이행 현상이 없어야 함
포름알데히드 추출물	75 μ g/g 이하
형광물질	불검출
생균수	3,000 CFU/g 이하
대장균군	음성
보존료	'화장품 중 보존료 성분 사용 및 제한량 규정 기준표' ⁴⁴⁾ 참조

(출처 : 국가표준 CNS 8157 물티슈(Wet wipes))

* '길이 및 너비', '매수(수량) 및 허용오차(날장 형태인 경우 허용오차 표기 면제)'를 표기해야 하며, 이외 표시 사항은 "상품표시법"에 근거함

(2) 표시 관리

□ 식품용 세척제 표시

- 식품용 세척제의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용 세척제 표시원칙"을 마련⁴⁵⁾하여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표시(*)는 사용 금지하고 있음

* <표 II-2 식품용 세척제 표시 위반 정황> 참조

- (의무 표시사항) 용기나 외포장에 중문 및 통용 부호로 표시
 - 제품명, '주요 성분'인 화학명, 순중량, 책임업체명 및 전화번호, 주소, 원산지(국), 제조일자(시효성이 있을 경우, 유효일자), 적용 대상 또는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 기타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한 사항
 - '주요 성분'의 화학명 항목은 단일 합성물질일 경우 그 화학명을 표시하며, 천연 재료를 화학 가공한 경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표시함. 또 천연재료를 화학가공 하지 않은 경우 각 개별 원료명을 표시함

44)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152&id=8568&chk=e8d90c51-3faf-49b8-a835-d7b37d8ebcca¶m=pn%3D1%26sid%3D1152>)(*첨부파일 참조)

45) 대만 식약서(<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486>)

<표II-5 식품용 세척제 표시 위반 정황>

표시 항목	표시 정황
‘천연’ 표시	모든 원료 출처가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본질을 개조하지 않은 천연 재료’에 속하지 않으나 제품명 또는 설명하는 문구, 도안, 기호 또는 첨부한 설명서에 ‘천연’ 등과 동일한 의미의 중문 외래어를 표기한 경우
	제품 중 일부 원료 출처가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본질을 개조하지 않은 천연 재료’이나 제품명, 그림 또는 기호에 천연 등과 동일한 의미의 중문 외래어 문구를 표기한 경우
	제품 중 일부 원료 출처가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본질을 개조하지 않은 천연 재료’이나 제품명, 그림 또는 기호 3가지 이외의 설명 문구에 ‘천연’이라는 중문, 외래어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원료의 제품 중 함량 비중을 동시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기(농)’ 표시	제품 중 모든 원료 출처가 중앙 농업 주무기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증한 경우가 아닌 경우이나 제품명 또는 설명의 문구, 그림, 기호 또는 첨부한 설명서에 ‘유기(농)’ 등과 동일한 의미의 중문, 외래어 문구가 있는 경우
	제품 중 일부 원료 출처가 중앙 농업 주무기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증한 경우에 속하나 제품명, 그림 또는 기호에 ‘유기(농)’ 등과 동일한 중문, 외래어 문구가 있는 경우
	제품 중 일부 원료 출처가 중앙 농업 주무기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증한 경우에 속하나 제품명, 그림 또는 기호 3가지 이외의 설명 문구에 ‘유기(농)’이라는 중문, 외래어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품 중 해당 원료의 비중을 동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식품용’ 또는 ‘무독성’ 등과 동일한 의미의 중문, 외래어 문구를 표기한 경우

(출처 : 식품용 세척제 위생표준)

□ 일회용 식기 표시

- (적용 대상) 식품접촉면에 합성수지 재료가 함유된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으로,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6조 의거, 표시⁴⁶⁾⁴⁷⁾
 - 일회용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일회용 합성수지 라미네이션(Lamination) 또는 코팅 제지 일회용 식기(컵, 그릇, 접시, 쟁반, 도시락 용기 제품 5종 포함)

46)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07&chk=0b5952aa-fa70-47e5-a527-a9cf4214a2fa>) (*표시해야하는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유형)

47) 대만 식품약품관리서(<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3388&id=9297>)(*식품용기, 기구, 포장 표시 Q&A)


-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하지 않은 나머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에 의거, 표시

○ (표시 내용)

- ‘식품접촉 용도로 제공’ 또는 동일한 의미의 문구 기재
- 식품접촉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재사용’ 또는 ‘일회사용’ 또는 동일한 의미 문구 기재
- 식품접촉면에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고유지 및 고온의 식품과 직접 접촉 하지 마세요’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의 경고문구 기재
-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재질명 및 내열온도, 수량 및 중량, 원산지, 제조일자(시효성이 있을 경우, 유효일자 표기), 주의사항이나 전자렌지 사용 관련 등 기타 경고문구, 기타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한 사항

○ (표시 방식) 인쇄, 날인, 압인 또는 표시 부착 방식으로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이나 본체에 표기

<그림 II-1> 일회용 종이컵 표시 예시



<표시 내용>

- 제품명(종이컵(뚜껑 포함))
- 재질
- 내열온도
- 수량 및 용량, 원산지
- 제조일자
- 제조업체, 공급업체명 및 주소
- 연락처
- 주의사항(재사용 하지 말 것 등)
- 보관방법

(자료 출처 : 구글 대만 이미지 검색)

□ 일회용 젓가락 및 냅킨

- (표시 근거)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서 공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에 의거, 표시
- (표시 내용)
 - 제품명
 - 생산,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및 원산지(수입품일 경우, 수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도 표기)
 - 상품 내용 : 주요성분 또는 재료, 순중량, 수량 등
 - 제조일자(시효성이 있을 경우 유효일자 표기)
 - 위험성이 있거나 위생안전과 관련된 경우, 특수 성질이나 특별한 처리를 한 경우 그 용도, 사용 및 보관방법, 기타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함
 - 기타 중앙 주무기관 규정에 따른 표기사항

□ 일회용 타월

- (표시 내용) 제품명, 원료, 종류, 길이 및 너비, 원산지, 수량, 제조일자,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및 주소
- 상술한 표시 내용 외에 “상품표시법”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해야 함

(3) 관련 영업(인허가, 수출입 등) 관리

- (인허가) 중앙 주무 기관에서 공고한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를 제조, 가공, 배합조제, 포장,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경우, 중앙 주무기관을 통해 검사 등록하여 허가 문서를 발급받아야 함⁴⁸⁾
 - 중앙 주무 기관에서 공고한 유형 및 규모에 해당하는 관련 업체는 중앙 또는 직할시, 현(시) 주무 기관에 등록해야 영업을 가능함
 - 추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중앙 주무기관에 심사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식품용 세척제의 경우, 위생복지부에서 상술한 검사 등록 의무 처리와 관련해 아직 공고하지 않았으나 관련 업체는 자가 관리를 실시하여 제품 안전을 확보해야 함
- * 등록 신청 후 영업 가능한 식품업체 유형, 규모, 시행일자 관련 규정⁴⁹⁾ 참조

48)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k=%u98DF%u54C1%u7528>)

49)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 (수입관리)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수입할 때 해관(세관) 전속화물분류코드에 따라 중앙 주무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제품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 (기타) 식품용 세척제 공장은 “식품 공장 건축물 및 설비 표준”의 기본 공통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함께 운영하는 식품용 세척제 공장은 공장을 분리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함

(4) 관련 업체의 안전 관리

- (자가 관리) 관련 업체는 자가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하고, 실험실을 마련하여 위생안전을 확보함
 - *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업체 유형과 규모’⁵⁰⁾,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련 업체의 유형과 규모’⁵¹⁾ 등은 중앙 주무기관에서 공고함
- (검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검사는 각급 주무기관 또는 위임, 위탁으로 인가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함
 - 각급 주무기관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 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 검사방법이 없을 경우,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법으로 검사함
- (조사 및 규제관리) 직할시, 현(시) 주무 기관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이 관련 법규에 적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업체가 협조하도록 하며,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제조, 가공, 조제 및 배합, 포장, 운송, 보관, 판매 장소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샘플검사를 실시
 - 상술한 조사 또는 샘플 검사 시, 상술한 장소의 식품업체에 원료 또는 제품의 출처와 수량, 작업, 품질보증, 판매대상, 금액, 기타 증명자료, 증명서 또는 기록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열람, 압류 또는 복사해야 함
 -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서 관련 법규 규정에 부적합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 확인될 경우 봉인해야 함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4070&chk=674b44fa-17d3-4874-8328-1dacd1be5633¶m=pn>)

50)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2&chk=5fa4c9f7-5bd6-4685-b1b6-4f338b336cbd>)

51)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1&chk=ac398658-0201-4ec6-90ae-e7db1293571e>)

5. 최근 동향

□ 2019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당 내 빨대 사용 금지⁵²⁾(18.2.13)

○ 환경보호서, 환경보호국민단체(NGO), 관련 학술계에서 합성수지제 사용 제한 및 금지 방안을 담은 “대만 해양 폐기물 처리 행동방안”⁵³⁾을 공동 발표함

- 동 “행동방안” 중 가장 이슈가 된 ‘합성수지제 사용 제한 및 금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추진될 예정임.⁵⁴⁾ 특히 합성수지제 빨대의 경우, 계획을 앞당겨 2019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식당 내 사용 시 빨대 제공을 금지하기로 함

<표 II-6> 합성수지제 사용 제한 및 금지 방안 3단계 계획

2018		1단계 : 2020	2단계 : 2025	3단계 : 2030
「대만 해양 폐기물 처리 행동 방안」 초안 발표	일회용 식기	현행 사용제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식당 내부용을 각종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합성수지제 일회용 식기 사용 전면 제한, 가격으로 사용량 제한 강화	전면 사용금지, 각종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일회용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일회용 테이크아웃용 음료컵의 자가 휴대 우대 조치 강화, 가격으로 사용량 제한	전면 사용 제한, 가격으로 사용량 제한 강화	일회용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전면 사용금지
	합성수지제 빨대	외식업체의 식당 내부용 음료제품에 일회용 합성수지제 빨대 제공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제 빨대 전면 사용 제한, 가격으로 사용량 제한	전면 사용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제 빨대 제공 금지

(출처 : 대만 해양 폐기물 처리 행동 방안)

- * (참고) “해양 폐기물 처리 행동방안” : 해양 쓰레기 중 합성수지제 관련 폐기물이 대부분인 것을 인지하고 환경보호단체는 합성수지제의 위해성을 우려해왔음. 이에 작년 환경보호서와 8개 환경보호단체는 해양폐기물 플랫폼을 마련하고 협상과 논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한 동 “행동방안”을 마련함. 해당 “행동방안”에는 합성수지제 사용금지, 수역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하천 쓰레기 제거 등 30여 가지 계획이 담겨있음

52) 대만 자유시보(<http://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2341382>)

53) 대만 환경보호서(https://enews.epa.gov.tw/enews/fact_Newsdetail.asp?InputTime=1070213135101)(* 첨부파일 1070213新聞附件-臺灣海洋廢棄物治理行動方案.pdf)

54) 대만 환경보호서 (https://enews.epa.gov.tw/enews/fact_Newsdetail.asp?InputTime=1070213135101)(* 첨부파일 1070213新聞附件--減塑期程表.jpg)

□ 타이페이시,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⁵⁵⁾(18.3.24)

○ 타이페이시 정부가 추진 중인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 정책 확대

-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유명 야시장에서도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며, 추후 다른 야시장까지도 확대 예정
- 현 타이페이시 시장 부임 이후, 시정부 청사를 시작으로 시정부 관할의 공무원관과 학교까지 멜라민 및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 확대

55) 대만 CNA(<http://www.cna.com.tw/news/alloc/201803240246-1.aspx>)

1. 일반 현황

- 우리나라의 ‘위생용품관리법’과 같이 ‘위생용품’에 특정된 법률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생용품 중 식품 접촉과 관련된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되고 있음
 - 위생용품 중 식품접촉물질에 해당하는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분류됨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중 규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 외 물수건, 나무젓가락, 종이냅킨은 후생노동성이 관리함*
 - * 법령이 아닌 행정기관 간 명령 또는 지시에 해당하는 ‘통지(通知)’로 관리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법적 관리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유관 협회의 자체 규정 등으로는 관리되고 있음⁵⁶⁾

<표 Ⅲ-1> 일본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국내 기준)	일본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 채소, 과일, 음식기 세척용으로 제공되는 것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행굼보조제	-	-	-
일회용 컵	· 별도 정의 확인되지 않음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본위생재료공업 연합회) 주로 사람의 피부 및 손가락 또는 몸의 주변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	-

56)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http://www.jhpia.or.jp/product/papertowel/>)

위생용품 종류 (국내 기준)	일본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일회용 이쑤시개	-	-	-
위생물수건	-	후생노동성	-
일회용 행주	-	-	-
일회용 타월	-	-	-

※ (참고) 위생재료 및 위생용품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입판매자 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JHPIA: Japan Hygiene Products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표Ⅲ-2>와 같이 제품을 구분함

<표 Ⅲ-2>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의 관련 제품 분야⁵⁷⁾

구분	용도	제품명
가정용	구급용품	거즈, 붕대, 탈지면, 면봉, 반창고, 삼각건, 마스크 등
	위생용품	유아용 종이 기저귀, 생리대, 탐폰, 청결 솜(清淨綿), Wet Tissue, 종이물수건, 유아 엉덩이용 물티슈, 마스크 등
	화장품	화장솜
	간호용(介護用)	어른용 기저귀, 초·중생용 기저귀, 패드류, 페이퍼 시트류, 청결솜, Wet Tissue, 엉덩이용 물티슈, 종이 물수건, 마스크 등
병원	의료용 제품	거즈, 붕대, 탈지면, 종이 기저귀, 패드류, 페이퍼시트류, 청결솜, 마스크 등
	간호용품	종이 기저귀, 패드류, 페이퍼시트류, 청결솜, 마스크 등
개호시설	개호시설	어른용 기저귀, 초·중생용 기저귀, 패드류, 페이퍼 시트류, 청결솜, Wet Tissue, 엉덩이용 물티슈, 종이 물수건, 마스크 등

57)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취급 제품' (<http://www.jhpia.or.jp/about/product/index.html>)

2. 위생용품의 정의

□ 일회용 식품 접촉물질(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등)

○ 위생용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일회용 컵이나 숟가락 등 식품과 접촉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분류함

-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⁵⁸⁾

· ‘기구’ : 식기, 조리도구, 그 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 그 외 물건을 말함(농업 및 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용으로 제공되는 기계, 기구, 그 외 물건은 제외)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고 있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하는 경우, 그대로 인도하는 것을 말함

□ 세척제

○ 세척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제62조 제2항)에서 “채소, 과일, 음식기 세척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서는 이러한 ‘세척제(洗淨劑)’를 “오로지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제외하며, 고형 비누를 제외”한다고 명시함⁵⁹⁾

□ 위생물수건, 일회용 젓가락, 종이냅킨

○ 위생물수건, 일회용 젓가락 등 식품 섭취와 관련된 물품의 취급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이 별도 통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대여 물수건 위생 확보에 대해서(1982년11월16일)’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일회용 젓가락 관련 감시지도에 대해서(2007년11월13일)’

○ 종이냅킨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1970년 통지⁶⁰⁾를 통해 기구(器具)로 취급하고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별도의 정의는 마련하지 않음

58) 일본 식품위생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33&openerCode=1)

59)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中 제5 세척제(洗淨劑)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kigu/dl/6.pdf>)

60)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형광물질을 사용한 종이 냇킨 취급에 대해서(1970년9월16일)’

(http://www.whoi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8540)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유관 협회의 물티슈 관련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의 안전위생 자주기준*으로 정한 성분액을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등을 소재로 한 부직포에 침투시킨 것으로 피부 등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⁶¹⁾
 - 상기 연합회는 물티슈 관련 세부 정의를 Wet Wipe류 자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Wet Wipe’류는 물티슈(Wet Tissue),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이외의 것을 말함
 - ‘물티슈(Wet Tissue)’는 주로 사람의 피부 및 손가락 또는 몸의 주변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며,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는 주로 사람의 손가락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함
 -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 중 업무용이란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시판용이란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함
- *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Wet Wipe류의 안전·위생 자주기준’⁶²⁾

61)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http://www.jhpie.or.jp/product/papertowel/index.html>)

62)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Wet Wipe류의 안전·위생 자주기준’ (http://www.jhpie.or.jp/standard/wet_wiper/img/wetwiper_standard02.pdf)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 법령 등

- 위생용품은 주로 식품위생법과 이에 근거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 (기구 및 용기포장) 크게 영업 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 원칙, 유독 유해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판매 등의 금지, 특정 기구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규격·기준의 제정을 규정함
 - 기구 및 용기포장 사업자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식품등 사업자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원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 제3조)
 - 또한 ①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청결과 위생 확보, ②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판매 등 금지, ③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해외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수입 시 마다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기구·용기포장별, 그리고 그 재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을 내포하는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포장의 종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 시 검사는 최초 수입 시에 필요한 검사(지도검사)를 하며 그 외 필요에 따라 검사(검역소 모니터링검사 포함)를 하고 있음
 - (세척제) 유독 유해한 세척제의 판매 등의 금지, 특정 세척제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세척제의 규격·기준의 제정을 규정함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 (기구 및 용기포장) 일반 규격, 일반 시험법,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을 규정함
 - (세척제)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규정함
- (기타) 후생노동성은 '물수건'과 '일회용 젓가락'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통지문을 통해 위생 및 안전 관리를 확보하고 있음
 - (물수건) '대여 물수건 위생 확보에 대해서'(1982년11월16일) 중 '물수건의 위생적 처리 등에 관한 지도 기준'으로 처리기준, 위생기준, 검사법을 명시함
 -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관련 감시지도에 대해서(2007년11월13일) 중 검사,

조치, 기타사항을 명시함

- (종이냅킨) '형광물질을 사용한 종이냅킨 취급에 대해서(1970년9월16일)' 중 종이냅킨은 '기구'로 취급하여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종이 냅킨의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제조 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관리기관

- 다음 표와 같이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후생노동성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 외에 식품안전위원회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리스크평가, 소비자청은 소비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위생용품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III-3> 위생용품 유형별 일본 내 관리 기관

위생용품 유형	관리기관
세척제	후생노동성
행굼보조제	-
일회용 컵	후생노동성
일회용 숟가락	(상동)
일회용 젓가락	(상동)
일회용 포크	(상동)
일회용 나이프	(상동)
일회용 빨대	(상동)
일회용 종이냅킨	(상동)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위생물수건	후생노동성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후생노동성 고시)'에 따라 기구 용기포장 및 세척제의 안전관리 실시
- 동 규격기준 외에 통지문을 통해 '일회용 젓가락', '물수건' 등을 관리함

○ 소비자청⁶³⁾

- 소비자청은 설립 목적에 따라 위생용품(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소비자, 사업자,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소비자 사고 정보를 집약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소비자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 사고의 분석, 원인 규명을 통해 소비자 주의 환기를 실시함
 - * 주요 역할은 소비자 정책의 기본계획책정과 검증·평가, 소비자피해 방지,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 소비자 교육의 추진, 물가 대책의 추진, 지방 소비자 행정의 지원임

○ 식품안전위원회⁶⁴⁾

- 독립적 리스크 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도 리스크 평가(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63) 소비자청 팸플릿 자료 '안전·안심 잘 사는 사회로'
(http://www.caa.go.jp/about_us/about/caa_pamphlet/pdf/pamphlet_all.pdf)

64)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란' (<http://www.fsc.go.jp/iinkai/>)

4. 위생용품 관리체계

□ 일회용 컵, 일회용 손가락 등의 일회용 식품 접촉물질(기구용기포장에 해당)의 규격 기준('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中)

- 일반규격(착색료의 사용제한, 유지성(油脂性) 식품용도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금지 등) 및 재질별 규격(합성수지(15종), 유리, 고무 등)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세척제의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

- 법적 기준('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中)

- 성분규격

- 세척제(고형 비누를 제외)는 비소, 중금속, 메탄올, 액성(液性)시험에 적합해야하며,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증류수로 함
-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을 가진 성분을 포함한 것이어야함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에 제시된 향료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인 향료를 함유한 것이어서는 안됨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에 제시된 착색료 및 다음에 제시된 착색료 이외의 화학적합성품인 착색료를 함유한 것이어서는 안됨

인단트렌블루-RS(Indanthrene Blue RS)

울 그린 BS(Wool Green BS)

퀴놀린 옐로우(Quinoline Yellow)

페이턴트 블루 브이(Patent blue V)

- 세척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것에 있어서는 그 생분해도는 85% 이상이어야 함

- 사용기준

- 지방산계 세척제에 있어서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0.5% 이하, 지방산계 세척제 이외의 세척제(오로지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및 고형 비누를 제외)에 있어서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0.1% 이하가 되도록 사용해야함
- 세척제(오로지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제외)의 사용할 때에 채소 또는 과실이 5분 이상 세척제의 용액에 담구지 않도록 해야 함

- 채소, 과일, 음식기는 세척제(오로지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제외)를 사용해서 세척한 후 음용 적합수에 행구어야함.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소 또는 과실에 30초 이상, 음식기는 5초 이상 흐르는 물로 행구고, 담겨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겨진물을 바꿔 2회 이상 행구어야함

○ 업계 자율기준

-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일본비누세제공업조합, 일본식품세척제위생협회의 음식기(飲食器)용 세척제 자주기준⁶⁵⁾이 있으며, 이 기준은 채소·과일용도가 아닌 용도가 '음식기'인 세척제의 성분 규격 및 사용 규격임
- (목적) 음식기용 세척제 성분규격을 두어 음식기용 세척제로 적합한 세척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 제품) 이 자주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세척제에 있어서 채소, 과일,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제공되는 것 중 '오로지 음식기의 세척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목적인 것' 즉 용도가 '음식기'인 세척제에 적용함
- (성분규격) 비소, 중금속, 메탄올의 성분 규격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것에 준하며, 다른 자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II-4> 음식기용 세척제 자주기준

성분	규격
효소	alpha-amylase, Protease, lipase에 대해서 배합 가능한 것으로 함
표백제	과탄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화 이소시아누르산나트륨에 대해서 배합 가능한 것으로 함
향료	화학적 합성품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 기재 품목 또는 IFRA실시요강(the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Code of Practice)에 따른 향료이어야 함
착색료	화학적 합성품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 기재의 착색료 및 퀴놀린 옐로우, 페이턴트 블루 브이 또는 안전성이 사업자에 있어 충분하게 확인되어 있는 것

- (사용기준) 음용 적합수로 행균. 흐르는 물로는 5초 이상, 담겨진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담겨진 물을 바꾸어 2회 이상 행균 것

65)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일본비누세제공업조합, 일본식품세척제위생협회의 '음식기(飲食器)용 세척제 자주기준' (http://shokusen.jp/ssk01/wp/wp-content/uploads/2016/07/washing_standard.pdf)

□ 위생 물수건의 위생 기준

○ 후생노동성 통지 '대여 물수건 위생 확보에 대해서(1982년11월16일)에서 '물수건의 위생적 처리 등에 관한 지도 기준'을 정하고 있음⁶⁶⁾

* (참고) 1982년12월3일부로 '물수건의 위생 확보에 대해서' 통지로 자가 처리 물수건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함⁶⁷⁾

- (목적) 물수건을 사용하기 위해 대여하고 그 사용 완료 후에는 이것을 회수해서 세척해 대여를 반복해 실시하는 세탁업의 영업자에게 물수건의 적절한 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 (처리기준 등) 물수건의 처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대여한 물수건은 적어도 4일 이내에 회수 처리할 것
 - 물수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오염 정도가 현저한 것 등과 그 이외의 것을 분류할 것
 - 오염 정도가 현저한 것 등으로 분류된 것과 그 이외의 물수건은 다음 표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제시된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세탁에 있어서 세탁기의 최대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표 III-5> 의 세탁 처리에 있어서 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표백제를 본 세탁 시 또는 전처리 시 첨가 하는 것은 상관없음
 - 세탁 종류 후의 마무리(펼치기, 접기, 말기 등) 및 포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청결하게 해서 실시하고, 세탁 등의 처리가 적절하게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 마무리가 완료된 제품은 그 위생 유지에 충분하게 유의하고 신속하게 대여를 위해 배송할 것. 또 신속하게 배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4℃ 이하에서 보관할 것
 - 물수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기계 기구 및 제품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대해서는 염소제 또는 계면 활성제 등의 수용액을 사용해 깨끗이 닦는 것으로 적절하게 소독 할 것
- (위생기준) 위생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변색 및 이취가 없을 것
 -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을 것
 - 황색포도구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일반 세균수는 1매당 10만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66)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대여 물수건 위생 확보에 대해서(1982년11월16일)
(https://www.city.kumamoto.jp/common/UploadFileDsp.aspx?c_id=5&id=3940&sub_id=7&flid=52398)

67)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물수건의 위생 확보에 대해서(1982년12월30일)
(http://www.whoa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8673)

<표 III-5> 오염 정도에 따른 물수건 세탁 방법

구분	세탁법	방법
오염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분류된 것	세탁 공정 중에 소독 효과가 있는 염소제를 사용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은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해서 60℃이상의 온탕(溫湯) 안에서 10분 이상 본 세탁을 실시하고, 탈수 후 행굼 및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것 - 행굼은 청결한 물(수도법에 근거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인 것이 바람직함. 이하 같음)로 4회 이상(각 3분 간 이상) 실시함. 각 회별로 탈수 할 것 -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표백 가루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행굼의 2회째 이후에 첨가하고 유리 염소 250ppm 이상이 되도록 실시할 것
	열탕 또는 증기에 의한 소독 후 세탁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은 80℃이상의 열탕에 10분 이상 담구거나 100℃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썬게 하고 그 후 세탁을 실시할 것 - 세탁은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해서 60℃이상의 온탕 안에서 10분 이상 본 세탁을 실시하고, 탈수 후 행굼은 청결한 물로 4회 이상(각 회 3분 이상)을 실시함. 각 회별로 탈수 할 것
오염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분류된 것	중복 세탁을 실시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은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해서 60℃이상의 온탕 안에서 15분 이상 본 세탁을 실시하고, 탈수 후 다시 같은 본세탁을 실시한 후 행굼 및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것 - 행굼은 청결한 물(수도법에 근거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인 것이 바람직함. 이하 같음)로 4회 이상(각 3분 간 이상) 실시함. 각 회별로 탈수 할 것 -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표백 가루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행굼의 2회째 이후에 첨가하고 유리 염소 250ppm 이상이 되도록 실시할 것
	효소제에 의한 전처리를 실시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처리는 적정량의 단백 분해 효소 배합 세제를 더한 60℃이상의 온탕 안에서 40분 이상 담구고, 탈수 후 세탁을 실시할 것 - 세탁은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해서 60℃이상의 온탕(溫湯) 안에서 10분 이상 본 세탁을 실시하고, 탈수 후 행굼 및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것 - 행굼은 청결한 물(수도법에 근거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인 것이 바람직함. 이하 같음)로 4회 이상(각 3분 간 이상) 실시함. 각 회별로 탈수 할 것 -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표백 가루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행굼의 2회째 이후에 첨가하고 유리 염소 250ppm 이상이 되도록 실시할 것

□ 일회용 젓가락 관련 검사 및 조치 기준

- 후생노동성 통지 ‘일회용 젓가락’ 관련 감시지도에 대해서(2007년11월13일)⁶⁸⁾로 일회용 젓가락 관련 검사 및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통지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에 대한 곰팡이방지제 관련 검사항목과 검출한도치를 명시함
 - (검사 항목 및 기준치) 곰팡이방지제,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류가 검사 대상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자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주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표 III-6> 일회용 젓가락의 검사 항목 및 검출 한도치

구분	검사항목	젓가락 한쌍당 한도치
곰팡이방지제	오르토펜페놀(OPP)	불검출
	티아벤 다졸(TBZ)	
	디페닐(DP)	
	이마자릴(Imazalil)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 염류	4mg ⁶⁹⁾ (이산화황으로서)

- (기타) 관련 사업자에게 제조 공정에서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지도

□ 종이냅킨 관련 기준

- 종이냅킨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을 따름⁷⁰⁾

68)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일회용 젓가락’ 관련 감시지도에 대해서(2007년11월13일)’
(http://www.whoi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KEYWORD=&EFSNO=9155)

69)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평가된 이산화황의 허용 1일섭취량(ADI) 0.7mg/kg bw/day를 성인(체중 50kg)당 허용 섭취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토대로 식품첨가물로서 섭취하는 양과 일회용 젓가락 중에 잔류하는 이산화황 농도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설정

70)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형광물질을 사용한 종이 냇킨 취급에 대해서(1970년9월16일)’

□ 물티슈 관련 업계 자주 기준

- (업계 자주 기준) 물티슈와 관련하여,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는 ‘Wet Wipe류의 안전·위생 자주기준’⁷¹⁾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목적) Wet Wipe류의 안전성 및 위생을 확보하고, 품질의 안정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 ‘Wet Wipe’류는 물티슈(Wet Tissue),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이외의 것을 말함
 - ‘물티슈(Wet Tissue)’는 주로 사람의 피부 및 손가락 또는 몸의 주변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며, 물티슈는 주로 사람의 손가락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함
 -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 중 업무용이란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시판용이란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함
 - (제조 기준) 제품은 천(기포, 基布)에 구성 성분액을 함유하게 투입시켜, 위생적으로 용기 또는 천으로 수납함
 - 천(기포, 基布)의 품질기준은 ▲현저한 변색 및 이취가 없을 것 ▲현저한 형광(물질) 또는 현저한 오염이 의심되는 형광(색)을 인정하지 않음 ▲ 포름알데히드는 따로 정한 시험에서 적합할 것
 - 물티슈(Wet Tissue)는 화장품기준 별첨에 준거해 피부에 대한 안전성에 지장이 없고, 품질 확보를 축적하는 범위 내 일 것, 또 화장품기준 별표 제3에 게재되어 있는 방부제의 최대 배합량을 <표Ⅲ-7>와 같이 발취하여 제시함
 - 손 닦는용 물티슈(紙おしぼり, お手ふき)는 식품첨가물 공정서 수재품목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이황화염소 외 <표Ⅲ-7>의 물티슈(Wet Tissue) 성분·분량의 범위로 함
 - 포장 및 용기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구조여야하며, 사용 시 위생적인 구조로 천(기포, 基布)을 수납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품질 기준) ▲현저한 변색 및 이취가 없을 것 ▲현저한 형광(물질) 또는 현저한 오염이 의심되는 형광(색)을 인정하지 않음 ▲ 포름알데히드는 따로 정한 시험에 적합할 것 ▲일반 세균수는 1g당 3,000개를 넘지 않을 것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을 것

71)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Wet Wipe류의 안전·위생 자주기준’
(http://www.jhpia.or.jp/standard/wet_wiper/img/wetwiper_standard02.pdf)

- (제조관리) 제조설비·구조, 위생관리, 품질관리는 아래와 같을 것
 - 제조소는 채광·조명·환기 등에 유의한 구조 일 것, 화장실은 격벽(隔壁)으로 제조소와 구분되어 있을 것, 제조소는 방충·방서(防鼠)에 주의한 구조일 것, 제조소 내에 작업자 전용 손 씻는 설비를 마련 할 것
 -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제조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비위생적인 물품을 두지 않을 것, 손가락은 소독액 등으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사용하는 원료·향료를 취급한 기구류는 사전, 사후에 세척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옷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할 것
 -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원료·천(기포, 基布) 및 용기 등은 관리 단위별로 시험 성적서를 3년간 이상 보존 할 것, 제품은 제조관리 단위별로 시험성적서를 3년간 이상 보존할 것, 시험검사 실시에 필요한 양의 제품을 제조관리단위별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이상 보존 할 것

<표Ⅲ-7> 물티슈의 자주 기준 중 방부제의 최대 배합량 기준

성분명	100g 중의 최대 배합량(g)
안식향산	0.2
안식향산 염류	합계량으로 1.0
염산디아미노에틸글라이신	0.20
감광소(感光素)	합계량으로서 0.0020
클로로크레졸(Chlorocresol)	0.50
클로로부탄올(chlorobutanol)	0.10
살리실산(salicylic acid)	0.20
살리실산염류	합계량으로서 1.0
소르빈산 및 그 염류	합계량으로서 0.50
데히드로아세트산 및 그 염류	합계량으로서 0.50
트라이클로산(triclosan)	0.10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 및 그 나트륨염	합계량으로서 1.0
페녹시에탄올	1.0
페놀	0.10
Sodium Lauryl Diethylenediaminoglycinate	0.030
Resorcinol	0.10
아연·암모니아·은 복합 치환형 제오라이트	1.0

성분명	100g 중의 최대 배합량(g)
Panthenyl Ethyl Ether Benzoate	0.30
isopropyl methylphenol	0.10
cetylpyridinium chloride	1.0
benzalkonium chloride	0.050
benzethonium chloride	0.20
chlorhexidine hydrochloride	0.10
orthophenylphenol	0.30
Sodium ortho-phenylphenate	0.15
은-동 제오라이트	0.5
chlorhexidine gluconate	0.050
cresol	0.010
Chloramine T	0.10
chloroxylonol	0.20
chlorphenesin	0.30
chlorhexidine	0.050
Lauryl isoquinolinium bromide	0.050
thianthol	0.80
thymol	0.050
trichlorocarbanilide	0.30
파라클로로카르바니리드	0.30
하로카르반(ハロカルバン)	0.30
hinokitiol	0.10
zinc pyrithione	0.010
Piroctone olamine	0.05
Iodopropynyl Butylcarbamate	0.02
폴리아미노프로비구아나이드(ポリアミノプロピルビグアナイド)	0.1
Methylisothiazolinone	0.01
2-(p-Dimethylaminostyryl)-3-heptyl-4-methyl-thiazorium Iodide	0.0015

IV

유럽연합

1. 일반 현황

-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위생용품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 및 물질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적용됨
-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물질'은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관련 규정에 적용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위생용품(일회용 컵, 일회용 식기 및 포크, 나이프, 냅킨 등)은 식품 접촉 물질로 관리됨
-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경우 EU 차원의 세척제 규정, 화장품 규정, 화학물질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유형에 따른 적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 밖의 특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을 제외)은 '일반제품안전지침 2001/95/EC'를 통해 관리됨

<표 IV-1> 유럽연합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EU		
	정의	관리 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시장출시 기준 · 부적합 제품 통보(RAPEX)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	-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유럽식품안전청(평가)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식품접촉물질 표시 · 승인물질 목록 및 사용 기준 · 부적합 제품 통보(RASFF)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시장출시 기준 · 부적합 제품 통보(RAPEX)
기타	-	· 유럽집행위원회(법률제정) · 회원국 관할당국(집행)	· 영업자 의무 · 부적합 제품 통보(RAPEX)

* 단, 동일 유형 간에도 용도, 성분 등에 따라 적용 법률 및 관리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2. 위생용품의 정의

□ 식품접촉물질

- 식품접촉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에 관한 규정(EC) 1935/2004⁷²⁾에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식품에 접촉하도록 의도된 것(예: 주방기구, 식기)
 - 식품과 이미 접촉되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이 의도된 것(예: 식품 포장)
 - 식품과 접촉되었거나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 시 그 구성성분이 식품에 이동(transfer)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예: 냅킨, 테이블 매트)
- * 단, 식품의 일부를 형성하고 식품과 함께 섭취될 수 있는 치즈 껍질이나 제조 육제품 또는 과일류의 외부 덮개 또는 코팅제, 고정된 공공 또는 민간 수도 공급 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특정 조치가 적용되는 재질 목록으로 총 17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1. 활성기능물질	10. 플라스틱
2. 접착제	11. 인쇄잉크
3. 세라믹	12. 재생 셀룰로오스
4. 코르크	13. 실리콘
5. 고무	14. 직물
6. 유리	15. 코팅제
7. 이온교환수지	16. 왁스
8. 금속 및 합금	17. 목재
9. 종이 및 판지	

□ 일반 소비자 제품(비식품)

-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생용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 위생용품에 관한 정의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세척제 및 화장품에 관한 특정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제품 일부에 적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세척제) 세척제라 함은 세정(washing) 및 세척(cleaning) 과정을 위한 비누 그리고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모든 성분 또는 혼합물을 의미함. 세척제는

72) 유럽규정(EC) 1935/2004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4R1935>)

액체, 분말, 반죽 등의 형태로 가정, 기관 또는 산업용 등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있음(유럽 규정 No 648/2004)

* (참고) 유럽 규정 No 648/2004의 Q&A 자료⁷³⁾에 따르면, 과일 및 채소류 세척을 위한 제품도 세척 용도(과일 표면 왁스 제거 등)로 사용되므로 동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세척제, 행굼보조제 등은 EU 규정 상 '세척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화장품)** 화장품이라 함은 단독 또는 주로 ▲세정, ▲향기 부여, ▲용모 변화 및 보호, 좋은 상태로 유지, ▲체취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제외(표피, 머리카락, 손톱, 입술 등),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는 용도의 성분 또는 혼합물을 말함(유럽 규정 No 1223/2009)

* (참고) EU 규정에는 우리나라의 '접객업소용 물티슈'에 해당하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유럽부직포협회(EDANA)의 자료⁷⁴⁾에 따르면 물티슈(wet wipes)는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됨

73) 유럽집행위원회, 유럽 규정 No 648/2004 Q&A 자료(2015)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9522/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pdf>)

74) 유럽부직포협회(EDANA), 물티슈의 안전성에 관해 (2018.3.20. 방문)
(https://www.edana.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edana-statement-_safety-of-wet-wipes.pdf?sfvrsn=2)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1) 식품접촉물질

□ 법적 근거

- 유럽연합은 식품접촉물질의 기본 체계에 대해 명시한 규정 No 1935/2004를 바탕으로 특정 물질(플라스틱, 활성기능물질, 세라믹, 재생셀룰로오스)에 관한 법령,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식품접촉물질을 규제함

<표 IV-2>식품접촉물질 관련 현행 유럽연합의 법령

일반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유형 No 1935/2004 · 식품접촉물질의 GMP에 관한 집행위 규정 유형 No 2023/2006 	
특정 물질에 대한 EU 법령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유형 No 10/2011 · 식품과 접촉하는 재생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유형 No 282/2008
	활성기능물질	식품과 접촉하는 활성기능물질에 관한 규정유형 No 450/2009
	세라믹	식품과 접촉하는 세라믹 물질에 관한 지침 84/500/EEC
	재생셀룰로오스	식품과 접촉하는 재생셀룰로오스필름에 관한 지침 2007/42/EC
	동 4가지 물질 외에 별도의 EU 법령이 없는 특정 물질의 경우 규정유형 No 1935/2004에 의해 규정되며 개별 국내법 적용이 인정됨	
기타 법령	특정 성분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특정 에폭시 유도체의 사용 제한에 관한 집행위 규정유형 No 1895/2005 · 고무 젓꼭지로부터 N-nitrosamines 및 N-nitrosatable의 방출에 관한 지침 93/11/EEC
	중국 또는 홍콩산/발 제품	중국 또는 홍콩산/발 주방기구(멜라민 또는 폴리아마이드로 제조)는 집행위 규정(EU) No 284/2011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안내 웹페이지⁷⁵⁾를 바탕으로 정리)

□ 관리기관

- 유럽식품안전청(EFSA)
 - 위해평가자로서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며, 승인물질 신청 자료의 검토, 심사, 승인을 담당함. EFSA는 개별물질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동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75)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안내 웹페이지 (2018.3.20 방문)
(https://ec.europa.eu/food/safety/chemical_safety/food_contact_materials/legislation_en)

-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유럽표준실험실(EURL-FCM)
 -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은 시장에 출시하는 영업자 및 회원국 관할기관의 공식 통제에 의해 검사되며, 검사 방법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역량은 유럽표준 실험실에서 관리함
- 회원국 관할 당국(집행)

(2) 일반 소비자 제품(비식품)

□ 법적 근거

-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생용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생용품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 및 물질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적용되므로 동일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분,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반 소비자 제품) 특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의약품, 의료 기기, 식품을 제외)에 대해 ‘일반제품안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95/EC(GPSD 지침)⁷⁶⁾이 적용됨
 - 동 지침은 장난감, 전기 및 전자 제품, 화장품, 화학제품 및 기타 특정 제품 등 부분별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부분별 법률과도 함께 적용됨
-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보완하는 별도의 부분별 법률 중 위생용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세척제) 세척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유형 (EC) No 648/2004⁷⁷⁾
 - (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⁷⁸⁾
 - (기타) 화학물질 관련 규정(REACH, CLP, 살생물제 관련 규정)

□ 관리기관

- 유럽집행위원회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
 - 비식품 소비자 제품(예: 화장품 및 그 원료, 장난감, 섬유, 의류, 개인 용품, 가정용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건강 안전 위험에 대한 견해 제공
- 회원국 관할 당국(집행)

76) 유럽 지침 2001/95/EC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1L0095>)

77) 유럽규정 (EC) 648/2004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2092333536&uri=CELEX:32004R0648>)

78) 유럽규정(EC) 1223/200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9R1223>)

4. 위생용품 관리체계

(1) 식품접촉물질

□ 개요

- 유럽연합은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 보장과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차원의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개별 국가법으로 보완될 수 있음
- 식품접촉물질은 정상적인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식품 구성에 용납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제품의 관능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이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우수제조기준(GMP)에 따라 제조되어야 함. 또한 제품의 표시, 광고, 제공 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됨
- (적용 대상)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젓가락, 일회용 종이냅킨 등

□ 표시

- 유럽 규정 No 1935/2004 제 15조에 따라 식품과 아직 접촉하지 않은 물질 및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때 다음이 수반되어야 함
 - '식품접촉용'이라는 문자, 사용 용도에 관한 특정 표시(예: 커피 머신, 와인병, 숟가락 등), 또는 식품접촉물질임을 나타내는 그림
 - *단, 그 특성상 식품과 접촉 할 의도가 있는 제품의 경우 의무 적용이 아님
 - 필요한 경우,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용방법
 - 성명 또는 업체명, 시장 출시에 책임이 있는 제조사, 가공업자 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
 - 물질 및 제품의 추적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표시
 - 활성지능포장의 경우 허용된 용도 및 용도에 관한 정보
- 활성지능물질의 경우 유럽 규정 No 450/2009 제11조에 따라 소비자가 비가식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먹지 마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이를 나타내는 그림을 명시해야 함

<그림 IV-1> 식품접촉물질 관련 표시



□ 승인 및 사용기준

- 식품접촉물질 제조 시 단량체, 개시물질(starting substances), 첨가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EU 통합 목록(Union List)에 규정하여, 동 목록에 포함된 물질만이 플라스틱 소재의 식품접촉물질의 제조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등록 되지 않은 물질을 식품접촉물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 규정 No 1935/2004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절차는 ▲신청서 제출 및 접수(회원국), ▲ EFSA 검토 및 위해평가, ▲ 과학적 의견 채택(EFSA 식품접촉물질, 효소, 착향료, 가공보조제(CEF) 패널) 순으로 진행됨
 - * 단, 유럽 규정 No 10/2011의 제6조(예외(완화)) 조항에 근거해서 EU 회원국의 개별법 조항 등에 따라 통합 목록에 없는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됨
-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목록화 하고, 이들 성분에 대한 용출 규격(SML, OML), 제한 및 규격, 상세 규격 등을 설정함
 - 총 이행량 기준(Overall Migration Limit, OML)
 -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로부터 이행되는 물질이 플라스틱의 표면적(dm²)당 1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식품접촉물질의 경우, 식품모사용매(food simulant) kg 당 60 mg을 초과하여 이행되어서는 안 됨
 - 특정 이행량 기준(Specific Migration Limit, SML)
 -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의 구성 물질이 통합목록에 명시된 SML을 초과하여 식품에 이행 되서는 안 됨

□ 부적합 제품 통보

- 유럽연합 내 식품 및 사료 관련 위해 정보는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회원국 간 신속하게 공유되며, 이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적절한 조치(회수, 폐기 등)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촉물질의 범주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일회용 컵, 일회용 식기 및 포크, 나이프, 냅킨 등)에 관한 통보 내용은 RASFF 포털 웹페이지 내 제품 분류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79)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표시 안내 문서 (2018.3.20 방문)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cs_fcm_legis_fcm-symbols.doc)

<그림 IV-2>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2) 일반 소비자 제품(비식품)

□ 일반 제품

- '일반제품안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95/EC'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전을 보장하고, 기존의 부분별 규제를 보완함
- (안전성평가기준)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함
 - EU 표준 및 이를 대체하는 자율 국가 표준
 - 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에서 작성된 표준
 - 제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
 -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규정
 - 최신 기술
 -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수준
- (영업자의무) 제품 생산자는 각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 동안 제품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80) 유럽집행위원회, RASFF 포털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portal/>)(2018.3.20 방문)

- 해당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통보
- 필요 시 시장에서 철수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경고하거나 회수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수행
- (RAPEX) 유럽집행위원회와 개별 회원국 간 긴급 통보 시스템(RAPEX)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동 시스템을 통해 관련 당국이 위해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받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EU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 이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이므로 각 회원국은 동 지침을 바탕으로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음

□ 별도 규정으로 관리되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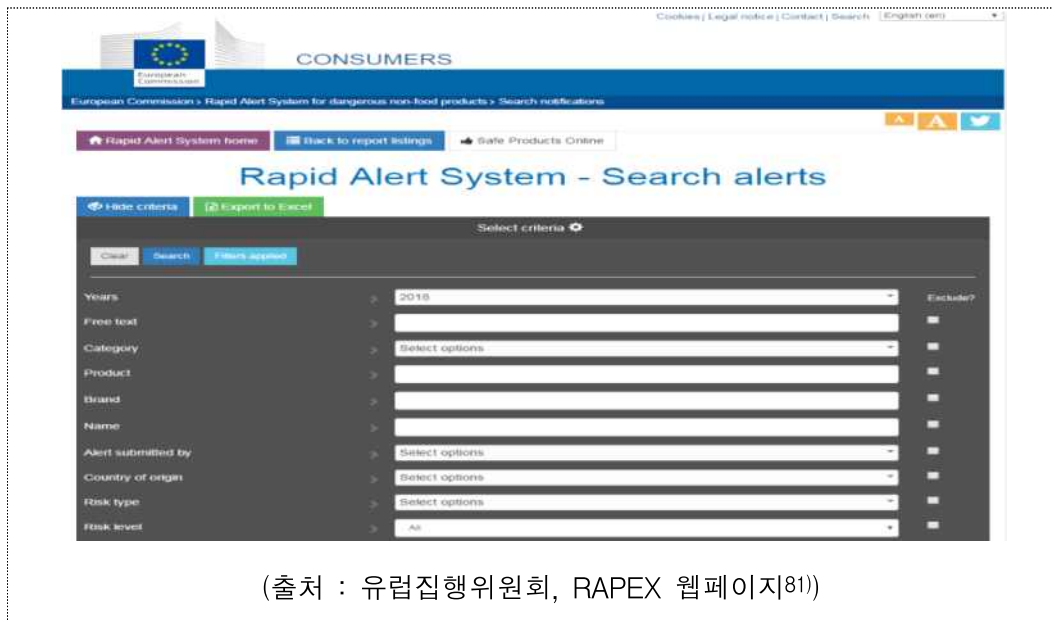
- 세척제
 - (근거법령) 세척제 관련 유럽 규정 No 648/2004을 바탕으로, 제품의 성분 또는 목적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규정(예: REACH, CLP, 살생물제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함
 - (적용대상) 과일 및 채소류 세척을 위한 제품,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도 동 규정의 범위에 포함됨
 - (시장출시) 세척제 및 계면활성제의 시장 출시 시 동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조건 및 특성,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에 대해 책임이 있음
 - (표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세척제 포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함
 - 제품명 및 상표명
 - 제품의 시장출시에 책임이 있는 제조사, 가공업자, 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
 - 함량
 -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 설명 및 특별한 주의 사항 등도 표시
- 화장품
 - (근거법령)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223/2009
 - (적용대상) 유럽부직포협회(EDANA)의 물티슈(wet wipes) 관련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개인용품, 화장품, 아기용 물티슈 등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존료 등 특정 원료는 승인되어 EU 화장품 규정에 명시된 것만 사용할 수 있음

- (안전성평가) 제품 출시 전 해당 제품은 동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최종제품에 관한 지식, 독성학적 프로파일, 화학적 구성, 노출 수준 등을 바탕으로 함

□ 부적합제품 통보

- 유럽연합 내 소비자 제품에 관한 위해 정보는 '비식품 제품 신속 경보 시스템 (RAPEX, 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을 통해 회원국에 공유됨
- 주간 리포트 또는 전체 검색 기능을 통해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정보, 조치 국가, 조치 결과, 기타 국가에서의 대응 내용 등이 제공됨

<그림 IV-3> 유럽 위해 비식품 신속경보시스템(RAPEX)



81) 유럽집행위원회, RAPEX 웹페이지(2018.3.20 방문)
 (https://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alerts/repository/content/pages/rapex/index_en.htm)

V

독 일

1. 일반 현황

□ 개요

- 국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은 성분 또는 제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식품, 사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 및 기타 생활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식품사료법(LFGB)」의 적용을 받음
- 「식품사료법(LFGB)」 소관부처인 연방식품농업부(BMEL)가 국내 위생용품이 포함되는 소비자와 밀접한 생활용품 분야의 소비자 건강 보호를 관장하며,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을 담당함
 - 연방식품농업부(BMEL) 사업영역의 행정청인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소비자제품 관련 중앙 행정기관으로 위기 관리 업무와 전국 감시 계획(BÜp)에 따른 주정부 식품감시당국의 감시 및 검사를 조정함
- 위해평가기관인 연방위해평가원(BfR)은 식품, 제품,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 및 성분의 건강 리스크를 평가하고, 독일 정부에 과학적으로 자문함. 또한 발생가능하거나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함

<표 V-1> 독일 위생용품 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정의	관리 유형 구분	관리기관
세척제	-	기타 생활용품	독일연방식품농업부 (BMEL)
행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식품접촉물질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기타 생활용품	
일회용 이쑤시개	-		
위생물수건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2. 위생용품의 정의⁸²⁾

- 독일 식품 및 소비재 관련 법령상 국내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 소비자들에 의해 사용 또는 소비될 용도로 정해진 생산품을 의미하는 '소비재(Verbraucherprodukte)'라는 광범위한 상위 개념에는 식품, 사료, 화장품, 생활용품(Bedarfsgegenstände) 등이 포함되며, 생활용품(Bedarfsgegenstände)은 다시 크게 '식품접촉물질'과 '기타 생활용품'으로 분류됨⁸³⁾
- 독일 「식품사료법(LFGB)」⁸⁴⁾은 식품 외에도 생활용품, 화장품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 「위생용품 관리법」상의 '위생용품'에 해당되는 제품 유형은 주로 독일 「식품사료법(LFGB)」의 '식품접촉물질'과 '기타 생활용품'에 해당됨. 독일 '식품접촉물질'과 '기타 생활용품'의 상세 분류는 아래 <표 V-2> 독일 「식품사료법(LFGB)」상 생활용품의 구분 참고
-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의 안내에 따르면 생활용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들을 의미함⁸⁵⁾
 - * 직접 접촉: 피부, 점막 및 코를 통한 접촉
 - * 간접 접촉: 식품, 화장품을 통한 접촉

82) 독일 BVL, '기타 생활용품이란?'(2018.3.20 방문)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2_Verbraucher/02_SonstigeBedarfsgegenstaende/01_WasSind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Def_sonstige_BGS_node.html)

83) 독일 BVL, '소비자제품: 법적 분류 및 BVL의 업무(2016)'

(https://www.bvl.bund.de/SharedDocs/Downloads/03_Verbraucherprodukte/Rechtsgrundlage/Verbraucherprodukte_rechtliche_Einstufung_Aufgaben_BVL_2016.pdf?__blob=publicationFile&v=4)

84) 독일 식품사료법(LFGB)의 풀네임: 식품, 생활용품, 사료법(LFGB)

85)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2018.3.23. 방문)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표 V-2> 독일 「식품사료법(LFGB)」 상 생활용품의 구분

독일 식품사료법(LFGB)상 생활용품 구분			예 ⁸⁶⁾
생활 용품 (제2조 제6항)	식품접촉물질 (제1호)	유럽 식품접촉물질규정(No)1935/2004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는 물건	식기, 포크, 나이프, 냅킨 등
	기타 생활용품 (제1~9호)	화장품과 접촉하는 포장, 용기, 기타 케이스(제2호)	
		입안의 점막과 접촉하는 물건(제3호)	치솔, 장난감 젓꼭지, 악기의 입구 등
		바디 케어용 물건(제4호)	면봉, 세척용 수건 등
		장난감 및 장식용 소품(제5호)	장난감
		사람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물건 등(제6호)	의류,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에서 필요한 세척 및 케어제품 또는 식품접촉물질용 세척 및 케어 제품(제7호)	물티슈 ⁸⁷⁾
		의류 등에 사용하는 가정용 함침제 및 마감제(제8호)	
		사람이 머무는 공간용 방향제(제9호)	

86)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2018.3.23. 방문)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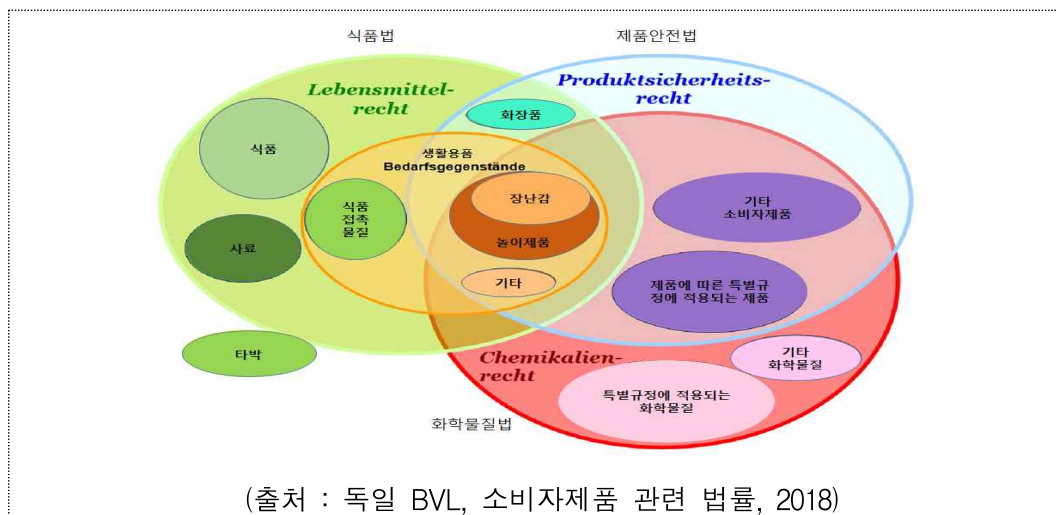
87) 물티슈의 경우 생활용품(수건)인 동시에 세정용으로 수건에 함유된 성분 및 혼합물로 인한 화장품이 될 수 도 있음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2018.3.23. 방문)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2_Verbraucher/02_SonstigeBedarfsgegenstaende/01_WasSind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Def_sonstige_BGS_node.html)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1) 개요

- 생활용품 중 '식품접촉물질'과 '장난감'의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통일된 규정⁸⁸⁾⁸⁹⁾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개별 회원국의 법규범에 의해 규제됨. 독일에서 '기타 생활용품'의 경우 크게 「식품사료법(LFGB)」, 「제품안전법(ProdSG)」, 화학물질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
- 「식품사료법(LFGB)」은 식품, 화장품외 생활용품(식품접촉물질,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 규율하며, 연방주의 식품감시당국이 해당 제품들을 감시함
- 「제품안전법(ProdSG)」은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대형 전자제품 및 기계부터 장난감까지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제품들에 적용됨. 제품 또는 성분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며, 주로 인체 접촉 정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제품안전법의 일반요건이 적용됨. 행정구(Regierungsbezirk) 또는 영업감독청(Gewerbeaufsichtsämter)과 같은 「제품안전법(ProdSG)」 소관 시장감시당국이 해당 제품들을 감시함
- EU 화학물질 관련 규정(REACH, CLP, 살생제 성분에 관한 법 등)에서는 성분, 혼합물(mixtures), 생산품의 화학적 안전성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행정청이 제품의 화학적 안전성을 감시함

<그림 V-1> 소비자제품 관련 법률⁹⁰⁾



88) 유럽규정 No.1935/2004, 유럽규정 No.282/2008, 유럽규정 No.450/2009 등

89)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2018.3.23. 방문)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3_AntragstellerUnternehmen/08_Rechtsvorschriften/02_LMKontaktmaterialien/bgs_LMKontaktmaterialien_rechtliche_grundlagen_node.html

90)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2018.3.23. 방문)

(2) 관련법령

□ 「식품사료법(LFGB)」⁹¹⁾

- (적용 대상) 동 법은 식품, 사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 및 기타 생활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기타 생활용품은 장난감, 가정용 세제, 의류, 방향제 등 주로 사람들이 밀접히 접촉하면서 사용하는 제품들임
- (주요 내용) 동 법 제5장 '기타 생활용품의 유통(제30조 ~ 제33조)'에서는 식품접촉물질 및 기타 생활용품에 관하여 ▲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제30조), ▲식품으로의 이행(제31조), ▲건강보호를 위한 수권(제32조), ▲기만으로부터 보호(제33조) 규정을 두고 있음
 - (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성분 조성, 특히 독성물질 또는 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생활용품의 제조, 취급, 유통이 금지되며, 식품섭취 시 건강에 해로운 생활용품을 식품 제조 또는 취급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식품으로의 성분 이행) 유럽규정 1935/2004의 제조요건(식품접촉물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활용품으로서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것이 금지됨. 식품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연방식품농업부(BMEL))는 법규명령을 통해 식품접촉물질에서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특정 성분들에 대해 이행 허용량을 설정할 수 있음
 - (건강보호를 위한 수권) 또한 건강보호를 위해 소관부처는 법규명령을 통해 특정 식품접촉물질의 제조, 취급에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네거티브), 특정 식품접촉물질 또는 그것의 일부 부분에 대해 특정 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포지티브) 정할 수도 있음.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식품용기포장 제품의 제조공정도 또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음. 소관부처는 식품접촉물질의 성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행되는 최대한계치 또는 그 함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물질에 대한 순도요건을 정할 수 있음. 또한 소관부처 특정 식품접촉물질에 대해 미생물 요건 및 경고표시 등을 정할 수 있음

□ 「생활용품령(BedGgstV)」⁹²⁾

- (제정 목적)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 등을 포함하는 생활용품에 관한 유럽의 다양한 지침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생활용품 및 식품접촉물질에 사용 가능한 물질,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3_AntragstellerUnternehmen/08_Rechtsvorschriften/00_Verbraucherprodukte/verbraucherprodukte_grundlagen_node.html)

91) 독일 식품사료법(LFGB)

(<http://www.gesetze-im-internet.de/lfgb/BJNR261810005.html#BJNR261810005BJNG000504116>)

92) 독일 생활용품령(BedGgstV)(<http://www.gesetze-im-internet.de/bedggstv/BedGgstV.pdf>)

금지물질, 식품포장유래 이행물질의 최대 함량 등을 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특정 식품접촉물질에의 사용이 금지된 성분(제3조, 부속서1), 승인된 성분(제4조, 부속서2), 승인되지 않는 제조 절차(제5조, 부속서4), 최대 함량(제6조, 부속서5), 최대 용출한계치(제6조, 부속서5a), 식품으로 이행 한계치(제8조 및 제10조, 부속서6), 경고표시(제9조, 부속서7), 표시(제10조, 부속서9), 검사법(제11조, 부속서10), 벌칙규정, 임시 첨가제 리스크(제4조, 부속서 13) 등이 정해져 있음

□ 「제품안전법(ProdSG)」⁹³⁾

- (적용 대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되는 또는 처음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골동품, 군대용품, 식품, 사료, 살아있는 식물 및 동물, 의약품, 식물보호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요건) 제조사,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만을 출시하여야 함. 관련 다른 법규명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 경우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고,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출시함.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인 경우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만 출시될 수 있음
 - * 제품안전법의 일반적 요건은 생활용품의 협의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인체 접촉이 적은 제품들에 대해 적용됨
- (CE 마크) 해당 제품이 관련 법규명령에 정해진 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공통 규격이 적용될 수 있음. CE 마크에 관하여는 유럽규정 No.765/2008 제30조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 관련 법규명령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포장 또는 설명서에 CE 표시를 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CE 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에 CE 마크가 없는 경우도 시장 출시가 금지됨
- (GS 마크) 산업체는 자율적으로 GS 인증 기관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GS 또는 “Geprüfte Sicherheit” (tested safety) 마크는 제품이 독일 「제품안전법 (ProdSG)」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함⁹⁴⁾

93) 독일 제품안전법(ProdSG)(http://www.gesetze-im-internet.de/prodsg_2011/ProdSG.pdf)

94) TÜV SÜD Korea, GS마크(2018.3.21. 방문)
(<https://www.tuv-sud.kr/kr-kr/activity/product-certification/gs-mark>)

- 화학물질 관련 법령(REACH, CLP, 세제 및 세척제법, 인산염최대함량규정 등)⁹⁵⁾ 96)
 - 「제품안전법 (ProdSG)」과 같은 제품 안전의 일반 요건에 대한 규정 외에도 제품 및 성분에 관한 특별 규정들이 존재하며,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어, 유럽 화학물질규정(REACH 규정, No. 1907/2006)에 따라 피부와 접촉하는 섬유 및 가죽 제품들의 경우 발암물질인 1차방향족아민으로 분해될 수 있는 아조 염료의 사용이 금지됨. 이러한 섬유 및 가죽 제품과 관련하여 독일 「생활용품법(BedGgstV)」에서는 수건, 기저귀, 기타 욕실 제품 등의 제조 및 취급에 아조 염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제3조에 따른 부칙1)
 - 다른 성분들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건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최대함량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2015년 12월부터 발암물질로 분류된 특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의 함량이 법적 한계치를 초과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피부 또는 구강과 접촉하는 부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됨
 - 유럽 화학물질규정에 따라 특별히 위험한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은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히 위험하다고 인정된 물질들은 소위 말하는 후보물질 리스트에 공개됨 (유럽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⁹⁷⁾). 이들 물질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후보물질 리스트상의 물질이 0.1%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판매사에게 문의할 수 있음
 -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데 수용 불가능한 건강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물질은 EU 에서 제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제품 중에는 발암, 유전적 변형,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특정 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전면 금지도 제한적으로 취해질 수 있음

(3) 관리기관⁹⁸⁾

□ 개요

- 제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여러 부처(Ministry)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독일 국내 법규를 제정하고 EU의 입법 절차에 참여함
- 그 중 국내 위생용품에 해당되는 소비자와 밀접한 생활용품 분야는 연방식품농업부(BMEL)가 소관함

95)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소비자 밀접 제품의 안전'(2018.3.21. 방문)
https://www.bmel.de/DE/Ernaehrung/Gesundheit/Inhaltsstoffe/_Texte/DossierInhaltsstoffe.html?docId=5575690

96) http://www.bfr.bund.de/de/risikobewertung_von_chemikalien_unter_reach-223.html

97) 유럽화학물질청(ECHA)(2018.4.5. 방문)(<https://echa.europa.eu/>)

98) 연방식품농업부(BMEL)(2018.3.22. 방문)
https://www.bmel.de/DE/Ernaehrung/Gesundheit/Inhaltsstoffe/_Texte/DossierInhaltsstoffe.html?docId=5575690

- 연방식품농업부(BMEL)
 - 식품, 사료, 생활용품, 화장품, 타박, 문신용품 관련 법령 제·개정
 - 제품 및 성분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 소비자제품 관련 중앙 행정기관으로 위기관리
 - 전국 감시 계획(BÜp)에 따른 주정부의 감시 및 검사 조정
 - 유럽 제품경고 시스템(EU-RAPEX) 컨택 포인트
- 연방위해평가원(BfR)
 - 식품, 제품,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 및 성분의 건강 리스크를 평가하고, 독일 정부에 과학적 자문 수행
 - 제품 및 성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하고, 확인 및 평가한 리스크에 대해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
-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⁹⁹⁾
 -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관할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 및 정책적 자문 역할
 - 위험한 제품에 대한 연방 중앙 신고 센터로 결함이 있고 위험한 제품에 대해 평가하고 신속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공유
 - 매년 제품안전 보고서(위험한 제품 2017 Gefährliche Produkte 2017)를 발표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다수의 법규명령 또는 식품사료법에 적용을 받는 제품들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연방환경청(UBA)¹⁰⁰⁾
 - 연방환경청은 환경 및 제품에서 유래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상태 조사, 상관관계 연구 및 미래를 진단하여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등 연방정부에 자문함
 -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학물질, 의약품, 식물보호제의 승인을 담당

99)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2018.3.22. 방문)
 (<https://www.baua.de/DE/Angebote/Publikationen/Berichte/ProdSG-2017.html>)

100) 연방환경청(UBA)(2018.3.22. 방문)(<https://www.umweltbundesamt.de/das-uba/was-wir-tun>)

4. 위생용품 관리체계

- 모든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연방주의 시장 감시 행정청은 샘플 채취 및 출입검사 방법으로 산업체가 소관 법률상의 요건 및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시함
- 개별 '기타 생활용품'에 따라 적용되는 EU법 및 독일 국내법이 상이함. 예를 들어 세계 및 세척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관련한 다양한 법이 적용됨¹⁰¹⁾
 - * 유럽 세제규정(EG) Nr. 648/2004, 독일 세제 및 세척제법, 독일 인산염최대함량규정, 수자원법, 하수규정, 화학물질 금지규정, 식품사료법, 살생제성분에 관한 법
- '기타 생활용품'은 식품, 사료, 화장품과 같이 「식품사료법(LFGB)」상의 제품들을 감시하는 연방주의 감시당국이 유통되는 제품의 샘플검사 및 제조사(또는 수입사)에 대한 출입검사를 통해 감시함. 각 연방주는 감시에 대한 일반행정규칙(AVV Rüb)에 따라 생활용품, 화장품, 담배제품에 대해 1년에 인구 2,000명당 1개 샘플을 검사함. 이 분야에서 연간 41,000개의 샘플이 검사되며, 그 중 약 1/3이 기타 생활용품 샘플임¹⁰²⁾
- 예를 들어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경우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이 식품 및 사료와 함께 생활용품을 감시하며, 생활용품 감시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중점 검사함¹⁰³⁾
 - 특정 물질(플라스틱, 세라믹, 셀로판 등)의 식품접촉물질의 경우 CE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며,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될 수 없음
 - 신체접촉 물건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민감 반응 유발물질(니켈, 분산염료 등)과 발암 또는 급성 독성물질(아조 염료, 니트로사민, 중금속 등)등을 중점으로 검사함
 - 가정용 화학물질의 경우 성분조성을 중점 검사함
- 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은 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시장감시당국(행정구(Regierungsbezirk) 또는 영업감독청(Gewerbeaufsichtsämter))이 감시함. 시장감시당국이 공통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확인하면 해당 사실을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에 통보함.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은 위험한 제품에 대해 평가하고 신속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정보를 공유함

101) 연방환경청(UBA)(2018.3.22. 방문)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chemikalien/wasch-reinigungsmittel/rechtliche-regelungen#textpart-1>)

102)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2018.3.22. 방문)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1_Aufgaben/05_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SonstigeBedarfsgegenstaende_node.html)

103)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2018.3.23. 방문)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1. 일반현황

- 프랑스에서는 위생용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구분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위생용품은 유럽의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에 정의된 식품접촉물질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규정으로 관리됨
- 일부 세척제는 세제에 관한 유럽 규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경우 화장품에 관한 유럽 규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프랑스 소비자법전은 일반적으로 제품과 용역의 품질 관리를 규정하며, 따라서 위생용품에도 동 법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표 VI-1> 프랑스 위생용품 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정의	관리 유형 구분	관리기관
세척제	-	세제	DGALN / DGCCRF
행굼보조제	-	-	DGALN / DGCCRF
일회용 컵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숟가락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젓가락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포크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나이프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빨대	-	식품접촉물질	DGCCRF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촉물질	DGCCRF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DGCCRF
일회용 이쑤시개	-	-	DGCCRF
위생물수건	-	-	DGCCRF
일회용 행주	-	-	DGCCRF
일회용 타월	-	식품접촉물질	DGCCRF

* DGCCRF :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 DGALN : 수자원생물다양성국

2. 위생용품의 정의

□ 식품접촉물질 정의 및 개념¹⁰⁴⁾

○ 유럽 규정 '1935/2004'에 따라 식품접촉물질이 정의됨

- 동 규정은 활성물질 및 지능물질(intelligent materials)을 포함해 다음 물질 및 물체에 적용됨
 - 식품과 접촉할 용도의 물질 및 물체
 - 용도에 부합하게 식품과 이미 접촉한 상태인 물질 및 물체
 - 식품과 접촉하거나 구성 요소가 식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 및 물체
- * (참고)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안내에 따르면 냅킨 및 종이 키친타월은 식품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간주됨
- 동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 및 물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컨테이너, 박스, 병, 필름, 종이 등 식품 보호 및 보관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 (예: 가정용 포장 용품)
 - 식기류 및 그릇, 주방기구, 식품 접촉용 가전제품
 - 영유아용 젖병, 젖병용 젖꼭지, 컵 등
 - 식품 생산, 가공, 저장, 운송에 사용되는 기계 및 도구 (예: 분쇄기, 절단기, 반죽기 등)
 - 활성 물질 (예: 가스, 산소, 에틸렌 등) 및 인텔리전트 물질 (예: 신선도 지시기)
 - 라벨, 클립, 냅킨, 종이 키친타월, 과일용 바구니 등
-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골동품으로서 제공된 물질 및 물체
 - 식품과 함께 섭취될 가능성이 높은 치즈, 유류 가공품, 과일의 껍질로 피복된 물질과 같은 코팅 물질
 -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된 식수대
- 또한, 동 규정은 일반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할 용도가 아닌 물질 또는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바닥, 선반, 식탁, 앞치마, 냉장고 외벽 등은 제외됨

104) 프랑스 경쟁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관련 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 해당 범위에 부합하는 위생용품은 식품접촉물질로서 관리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서 정의한 다수의 위생용품은 식품접촉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세제 정의 및 개념¹⁰⁵⁾

○ 유럽규정 '648/2004'에 따라 세제가 정의됨

- 세제란 세정(washing) 및 세척(cleaning) 과정을 위한 비누 및/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또는 조제품을 의미함. 세제는 액체, 분말, 반죽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가정, 기관, 산업용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있음

* (참고)벨기에 연방보건부 안내 자료¹⁰⁶⁾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과일 및 채소 세척 제품이 세제에 관한 유럽 규정 '648/2004'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며, 동 규정 제2조(3)항의 '세척'에 관한 ISO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합의했음. 해당 유형의 제품에는 세제 규정 이외에도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음

□ 화장품의 정의 및 개념¹⁰⁷⁾

○ 화장품은 유럽규정 '1223/2009' 제2조 및 '공중보건법전' 제 L5131-1조에 의거해 정의됨

- 화장품이란 배타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세정하거나, 향기롭게 하거나, 용모를 바꾸거나, 좋은 상태로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채취를 중화할 목적으로 인체 표면 부위나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는 용도의 모든 성분 및 혼합물을 의미함

* 동 보고서 '유럽연합' 항목 참고

105) 유럽규정 648/200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648&from=FR>)

106) 벨기에 연방보건부, '세제 판매' (2016.01)
(<https://www.health.belgium.be/fr/la-commercialisation-des-detergents>)

107) 프랑스 의약품보건제품안전청, '화장품 규제' (2016.04)
(http://ansm.sante.fr/content/download/57949/743945/version/9/file/QR-reglementation+_cosmetiquesavril2016.pdf)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 기관¹⁰⁸⁾

□ 법적 근거

- 제품과 용역의 품질은 프랑스 ‘소비자법전¹⁰⁹⁾’을 통해 관리됨
- (식품 접촉 물질)유럽연합의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유럽 차원에서 규제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국 규정으로 별도 관리함
 -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프랑스 자국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식품 및 음료 제품 접촉용 실리콘 탄성중합체(silicon elastomer)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물체에 관한 1992년 11월 25일자 시행령¹¹⁰⁾
 - 식품 및 음료 제품 접촉용 고무 물질 및 물체에 관한 1994년 11월 9일자 시행령¹¹¹⁾
 - 식품 접촉용 스테인리스 스틸 물질 및 물체에 관한 1976년 1월 13일자 시행령
 - 식품 및 음료 제품 접촉용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물질 또는 물체에 관한 1987년 8월 27일자 시행령¹¹²⁾
- (세제)유럽연합의 세제에 관한 규정 ‘648/2004’가 적용됨
- (화장품)화장품 관리 규정으로 유럽규정 ‘1223/2009’ 와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이 있음
- 이외에도 제품의 용도, 성분 등에 따라 유럽연합 소비자 제품 규정 및 화학제품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관리 기관

- (식품접촉물질)경제재정부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 (세제)생태학적이행연대부 수자원생물다양성국(DGALN),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 (화장품)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108) 프랑스 경제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관련 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109) 프랑스 소비자법전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69565>)

110) 프랑스 1992년 11월 25일자 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80508>)

111) 프랑스 1994년 11월 9일자 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617100>)

112) 프랑스 1987년 8월 27일자 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57729&dateTexte=20171120>)

4. 위생용품 관리체계¹¹³⁾¹¹⁴⁾

□ 개요

- 프랑스의 식품접촉물질, 세제 제품, 화장품 등 위생용품과 관련된 제품은 유럽연합의 관리체계 하에 관리됨. 기준규격, 표시, 사용인증 절차, 영업 인허가 제도는 유럽과 동일함
 - * 동 보고서 ‘유럽연합’의 ‘위생용품 관리체계’ 항목 참조
- 식품접촉물질의 경우 유럽 차원에서 규제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은 자국에서 별도 관리함
- 또한 일반 소비자 제품에는 프랑스 소비자법전에 따라 제품 출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제품이 유효한 규범에 부합하는지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됨

□ 식품접촉물질

- 유럽 차원에서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일반 규정 ‘1935/2004’을 통해 식품 접촉용 물질 및 물체의 특성을 정의하고 일반적인 안전 요건을 설정함
 - 동 규정은 불활성 원칙에 근거하며, 불활성 물질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식품의 관능적 특성이나 구성을 변경하지 않음
 - 일반 규정은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물질 17가지를 특정 조치 대상으로 구분함
 - 니스와 피복을 포함한 플라스틱 물질, 재생 셀룰로오스, 합성고무, 천연고무, 종이 및 마분지, 세라믹, 유리, 금속 및 합금, 나무, 섬유 제품, 파라핀 왁스 및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 활성 물질, 풀, 코르크, 이온교환수지, 인쇄 잉크, 실리콘
 - 일부 물질에는 특정 유럽 지침을 통한 세부 조치가 적용됨. 세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에 세라믹,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활성기능물질,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이 포함됨
 - 세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회원국은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자국 규정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음

113) 프랑스 경쟁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관련 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114)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식품접촉물질, 정의와 규제 틀’ (2016.12)
(<https://www.anses.fr/fr/content/mat%C3%A9riaux-au-contact-des-aliments-d%C3%A9finition-et-encadrement>)

- 프랑스에서 자국 법규로 관리하는 물질에는 실리콘, 고무 소재 물질,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이 포함됨

<표 VI-2>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식품접촉용 물질 관리 체계

	유럽연합		프랑스 자국규정
	일반규정	세부규정	
물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촉물질 일반 - 특정 조치 적용 물질 · 플라스틱 물질 · 재생 셀룰로오스 · 합성고무 · 천연고무 · 종이 및 마분지 · 세라믹 · 유리 · 금속 및 합금 · 나무 · 섬유 제품 · 파라핀 왁스 및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 활성 물질 및 물체 · 풀 · 코르크 · 이온교환수지 · 인쇄 잉크 · 실리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라믹 ·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포함) · 활성기능물질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 · 고무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 세부 규정의 부재를 보완하고 유럽 일반 규정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산업계 일각에서는 유럽의 일반 규정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조 실천 가이드를 작성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했음. 이러한 가이드는 업계 자율 적용 대상임
- 유럽 회원국들은 가이드가 유럽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대상 업계에서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를 평가함
- 프랑스에서는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가이드에 대한 평가 견해를 제공함.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된 경우, 해당 가이드는 관보에 게시되기 전 소비평의회(CNC)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출됨

- (적합성 증명)프랑스 소비자법전에 따르면 제품 출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제품이 유효한 규범에 부합하는지 보장해야 함
 - 이에 따라 원료 공급업자는 고객에게 지정된 실험실에서 발부한 서면으로 작성된 적합성 증명서(Declaration of compliance)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질이 식품 접촉용으로 사용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적합성 증명서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유럽 일반 규정 '1935/2004'에 의거함
 - 동 증명서의 목적은 다음을 위해 다양한 영업자 사이에서 책임과 조화를 강화하는 것임
 - 물질 및 물체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적합성 보장
 -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보장 (예: 물질 성분에 관한 정보)
 - 해당 물질 및 물체의 안전성과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보장 (예: 접촉 시간 및 온도에 관한 정보, 식품 유형에 관한 정보)
 - 유럽 일반 규정에 부합하는 적합성 증명서는 보건 안전성에 관한 요소 뿐만 아니라 다음 요소들도 모두 나타내야 함
 - 물질 및 물체는 유럽규정 '1935/2004' 및 GMP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부합하게 제조되어야 함
 - 업체는 이력추적 체계를 이행해야 함
 - 물질 또는 물체는 식품의 구성성분에 용인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거나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함
- (표시)식품접촉물질 표시는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됨
 - * (참고)프랑스 시행령 '2007-766'에는 식품접촉물질처럼 보이는 외형에 관계없이 식품접촉 용도가 아닌 물질에는 눈에 띄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와 관련해 1983년 1월 28일자 시행령에는 잔 및 포크와 이를 차단하는 엑스자로 구성된 그림 표시가 제시됨. 이와 별개로 프랑스 당국은 영업자에게 유럽규정 '1935/2004'에 의거한 식품접촉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의 식품접촉물질 표시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조언함
- (처벌규정)소비자법전에 의거해 식품접촉물질 관련 요건 미준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
 - 유럽 식품접촉물질 규정 '1935/2004', '식품 접촉용 물질 및 물체와 관련해 소비자법전을 적용하는 시행령 No. 2007-766', 이외 관련 규정 및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접촉용 물질 및 물체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 내놓거

나, 판매하거나, 무료로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됨

- 유럽규정 '1935/2004'의 제1조 ~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당 법률 적용을 위한 규정, 식품접촉물질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관한 유럽규정 '2023/2006' 제1조 ~ 제7조, 프랑스 소비자법전 제L.412-1조에 근거한 공무원 시행령과 국가 시행령을 위반할 시, 제L.454-1조 ~ 제L.451-3조 및 제L.412.1(7)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위반 행위와 혼동되지 않는 경우, 제R.451-1조에 명시된 제5급 위반죄로 처벌함

5. 최근 동향

□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및 접시 금지¹¹⁵⁾

○ 근거법령

- 프랑스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¹¹⁶⁾
- 프랑스 2016년 8월 30일자 시행령¹¹⁷⁾

○ 규제 내용

- (개요)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및 접시 제품 판매와 유통이 금지될 예정임
- (목적) 동 규제는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소멸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되며 유독성 제품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마련됨
- 2016년 8월 30일자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행 형태를 제시함
 - 생물자원(biosource)으로 전체 혹은 부분이 구성되고 가정용 퇴비로 퇴비화 가능한 일회용 제품은 테이크아웃점이나 현장에서 섭취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판매되거나 무료로 배포될 수 있음
 - *(참고) 생물자원(biosource) 제품이란 바이오매스에서 얻은 재생 가능한 일차 원료로 만든 비식품 산업 제품임. 바이오매스 일차 원료로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대나무 등
 - 허용된 퇴비화 가능한 일회용 접시의 생물자원 함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함 (2020년 1월 : 50%, 2025년 1월 : 60%)
- (대상업계) 동 규정은 관련 제품 생산 업계와 모든 식품 관련 업계에 적용됨
 - 식품 관련 업계에는 전통 외식업소 및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업소, 주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 모든 관련 업소가 포함됨
 - 관련 제품 생산 업계에는 플라스틱 식기 생산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

115) 프랑스 경제재정부, 2016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gobelets-en-plastique-interdits-au-1er-janvier-2020>)

116) 프랑스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1044385&dateTexte=20180313>)

117) 프랑스 2016년 8월 30일자 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3076240&dateTexte=20180313>)

1. 일반 현황

- 미국은 우리나라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포괄적 의미의 '위생용품'에 대한 개념이나 단일화된 관련 법령,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기존에 식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관리하는 체계를 일부 위생용품에 적용하고 있음
 -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세척제나 행굼보조제, 일부 일회용품 등의 위생용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용도와 사용 조건, 특성에 따라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접촉성분(FCS, Food Contact Substances)으로 규제되며, 위생물수건과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간주하는 등, 규제 범주가 다양함
-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식품영업자의 위생용품 취급 위생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위생용품 취급 위생 등에 관한 관리규칙이나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의 주정부는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¹¹⁸⁾'를 모델로 삼아 제정함¹¹⁹⁾

<표 VII-1> 미국 위생용품 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미국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과일과 채소의 박피 보조 또는 세척에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약품청	· 2차직접식품첨가물 승인제 · 기준규격 & 표시
행굼보조제	-	식품의약품청	· 식품접촉성분 신고제
일회용 컵		주정부 식품접객업소 관할기관	· 일 회 제 공 품 (single-service articles) : 식탁용 식기류(tableware),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식기류(carry-out utensils) 그리고 한 사람이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조를 갖춘 포장재(wrappers)와 이쑤시개, 빨대, 식시매트, 용기, 봉지 등의 유형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이쑤시개			

118) 식품의약품청(FDA) 'Food Code(2017)'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FoodCode/UCM595140.pdf>

119) 미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는 미국의 행정관리체계상 주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정부는 중간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일정한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된 식품의약품청의 'Food Code'를 표본으로 삼고 있음

위생용품 종류	미국		
	정의	관리기관	관리 현황
일회용 종이냅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닦기(wiping) 용도로만 판매되는 종이타월이나 종이냅킨과 같은 지류제품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의약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관리 • 화장품으로서 “창결이나 미용, 매력증진, 용모 개선을 목적으로 신체에 사용 (문지르기, 붓기, 뿌리기 또는 분사하기 하는 제품)으로 정의
위생물수건			

2. 위생용품 정의

□ 개요

- 미국은 위생용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 정의가 없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나 사용 조건 등에 따라 규제 체계에 맞는 용어나 개념을 두고 위생용품을 관리함. 다만, 일회용품의 정의 또는 종류는 식품영업장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요건에 명시되어 있음

□ 세척제

- 미국은 '세척제'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다만, 우리나라 세척제 등 과일과 채소에 사용하는 제제와 유사한 개념이 '2차 직접 식품첨가물'의 한 유형인 '과일과 채소의 박피 보조나 세척에 사용되는 제제¹²⁰⁾'로 지정되어 있음. 식품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제제로서의 세척제에 관한 법적 용어 정의나 개념은 확인되지 않음
- (2차 직접 식품첨가물(Secondary Direct Food Additives)의 정의)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가공 중 식품에 기술적인 효과를 주지만 최종재에는 주지 않는 첨가물(예: 가공보조제)로, 일부는 식품접촉성분에 대한 정의에 부합됨

□ 헹굼보조제

- 헹굼보조제에 대한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식품접촉성분 신고 조회사이트¹²¹⁾에서 헹굼보조제(rinse aid)로서 성분을 신고한 현황이 확인됨

□ 위생물수건 및 일회용 물티슈

- 위생물수건이나 일회용 물티슈의 개별유형에 관한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피부의 보습(moisturizing) 또는 세척(cleansing) 용도로서 이들 유형과 유사한 일회용 포(Disposable wipes)를 화장품으로 규제함¹²²⁾

120) 연방규정(21CFR173.315) 과일과 채소의 박피 보조 또는 세척에 사용되는 제제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0772a706d8be73c3f516ff77b406aabe&mc=true&node=pt21.3.173&rgn=div5#se21.3.173_1315)

121) 식품접촉성분(FCS) 신고 조회사이트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FCN>)

122) 일회용 포(Disposable Wipes) (<https://www.fda.gov/Cosmetics/ProductsIngredients/Products/ucm441465.htm>)

- * 포(wipes)란, 시트(sheets) 형태의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면, 목재펄프 또는 레이온 섬유 같은 재료로 만들어 소형포장 또는 벌크 포장재에 포장될 수 있음
-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청결이나 미용, 매력증진, 용모 개선을 목적으로 신체에 사용(문지르기, 붓기, 뿌리기 또는 분사하기)하는 제품으로 정의함¹²³⁾

□ 일회용품

- **(화장지·종이냅킨·행주·타월)** 법적 용어 정의 또는 개념은 확인되지 않음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이쑤시개)** 연방차원의 법적 용어 정의 또는 개념은 확인되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에서 일회용품 개념에 해당되는 일회제공품(Single-service articles)¹²⁴⁾의 종류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일회제공품의 정의)** 식탁용 식기류(tableware),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식기류(carry-out utensils) 그리고 한 사람이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조를 갖춘 포장재(wrappers)와 이쑤시개, 빨대, 식사매트, 용기, 봉지 등의 유형이 있음
- **(일회용 면봉·기저귀)** 법적 용어 정의 또는 개념은 확인되지 않음

123) 미국 법령과 화장품 (https://www.fda.gov/Cosmetics/GuidanceRegulation/LawsRegulations/ucm2005209.htm#U.S._Law)

124)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에서 일회제공품(Single-service articles)은 다음과 같이 일회사용품(Single-use articles)과 달리 정의되므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 (1) 한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설계 및 구성된 대용량 식품용기와 기구를 말함
- (2) 납지(wax paper), 고기 포장용지, 식품 포장용 랩, 알루미늄 재질 식품용기, 병, 플라스틱 통, 양동이, 빵 포장지, 피클 통, 케첩 병, 다회사용 기구 관련 조항(§§ 4-101.11, 4-201.11, 4-202.11)에 따른 재질, 내구성, 강도, 청결 규격에 맞지 않는 10번 캔이 있음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 개요

- 미국의 위생용품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¹²⁵⁾에 근거한 연방규정(CFR) 21편 ‘식품 및 의약품’에 따라 관리되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청(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임
- 미국의 위생용품은 식품첨가물과 식품접촉성분 등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성분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중심으로 관리됨

<표 VII-2> 위생용품 관련 주요 규정

식품첨가물 유형		관리형태	연방규정
2차 직접첨가물			21CFR173
간접 첨가물	공통	승인	21CFR174
	접착제 및 코팅제의 성분		21CFR175
	종이 및 종이 판지 성분		21CFR176
	폴리머		21CFR177
	보조제, 생산보조제 및 소독제		21CFR178
잠정 직·간접 첨가물		조건부 승인	21CFR180
사전승인 식품성분		승인면제	21CFR181
GRAS 사전승인 직접성분		신고	21CFR184
GRAS 사전승인 간접성분			21CFR186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		-	21CFR189

- 또한, 미국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제조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일회용품의 취급 위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세척제

- 세척제는 식품첨가물 관리 규정 중 연방규정(CFR) 21편 ‘식품 및 의약품’의 173항 ‘식품에 허가된 2차 직접 식품첨가물’에 명시되어 있음
- (21 CFR 173.315) 과일과 채소의 박피 보조나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125)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http://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21/chapter9&edition=prelim>)

□ 행굼보조제

- 행굼보조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나 식품접촉성분으로서 산업체의 자율 신고 방식으로 관리됨

□ 위생물수건 및 일회용 물티슈

- 위생물수건과 같은 포(wipes)는 화장품 관련 규정을 따름
 - 연방규정(CFR) 21편 '식품 및 의약품'의 'SUBCHAPTER G—화장품'¹²⁶⁾

□ 일회용품

- (화장지·종이냅킨·행주·타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통상 닦기(wiping)를 목적으로만 판매되는 종이타월이나 종이냅킨과 같은 지류제품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간주함 (정책준수지침(CPG 100.600)¹²⁷⁾
-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이쑤시개) 식품영업자와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의 취급 위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확인됨
 -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 관련 식품영업자) 식품(또는 식이보충제)영업자에 적용되는 한번 사용하려는 기구, 종이컵 및 종이타월 등의 일회제공품에 대한 취급관리 요건
 - (21 CFR 110)¹²⁸⁾ 식품의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에 적용되는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의 110.35 위생관리
 - (21 CFR 111)¹²⁹⁾ 식이보충제의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업에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의 111.27 사용 장비와 기구 요건
 -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위생용품 취급 등에 관한 주정부의 관리 규정은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2017)'을 표본으로 삼아 그대로 또는 자체 현황에 맞게 수정한 형태로 제정됨¹³⁰⁾

126) 연방규정(CFR) 21편 '식품 및 의약품'의 'SUBCHAPTER G—화장품'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4f43ba648b8164c5a5593e76de5e2dfe&mc=true&tpl=/ecfrbrowse/Title21/21CsubchapG.tpl>)

127) 정책준수지침(CPG. 100.600) 미용티슈, 종이냅킨, 종이타월 및 유사 지류제품의 규제 현황

(<https://www.fda.gov/iceci/compliancemanuals/compliancepolicyguidancemanual/ucm073825.htm>)

128) 연방규정(21CFR110) 식품의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에 적용되는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87c5671cc447b403c7882327d6daaa49&mc=true&node=pt21.2.110&rgn=div5>)

129) 연방규정(21CFR111) 식이보충제의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업에 적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eee39a0eae80fdb0c77f4f32bd0055d&mc=true&node=pt21.2.111&rgn=div5>)

130) 주 및 관할영토별 'Food Code' 채택 현황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FoodCode/UCM577858.pdf>)

4. 위생용품 관리체계

□ 개요

- 미국의 위생용품은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에 적용되는 다음의 주요 관리제도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¹³¹⁾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주는 성분으로 정의되며, 크게 직접첨가물과 간접첨가물로 구분됨
 - **(식품접촉성분)** 식품접촉성분은 식품에 기술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품의 제조, 포장, 저장, 수송, 취급에 사용하는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정의되며, 기존에 승인 형태로 운영했던 간접첨가물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용어임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성분(GRAS))**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하며, 과학적 절차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1958년 이전 식경험이 있다는 근거 조건이 성립되어야 GRAS 성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잠정 직·간접첨가물)** 식용으로나 식품접촉표면에 사용된 전례가 있지만 새로운 정보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성분으로 아크릴로니트릴 중합체 등 4종이 등재되어 있음
 - **(사전승인 식품성분, Prior-Sanctioned Food Ingredients)** 사전승인 식품성분은 식품의약품청(FDA)과 농무부(USDA)가 식품첨가물법 개정(1958년 9월 6일)이전 특정한 사용(식품포장재 포함)에 대해 승인을 한 성분으로 12종이 등재되어 있음
 -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 공중보건에 위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거나 식품에 사용했을 때 안전하다는 과학적 자료의 불충분으로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으로, 직접첨가물 13종, 간접첨가물 6종이 등재되어 있음
- 식품의약품청(FDA)의 '규제 면제(ToR)' 신청에 관한 지침¹³²⁾과 식품포장재 전문지¹³³⁾에 따르면, 미국은 "가정용 기구용기 면제(Housewares Exemption)"라는 개념을 두고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종이컵과 그릇, 플라스틱 섭취용 기구, 식탁용 식기류

131) 미국에서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첨가하는 성분은 크게 식품첨가물과 식품접촉성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성분(GRAS)과 관련된 제도에 따라 관리됨. 그밖에 잠정 직·간접 식품첨가물, 사전승인 식품 성분 그리고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 관련 조항에서도 식품에 사용되는 직·간접 첨가물과 식품접촉성분을 규정하고 있음

132) 식품접촉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규제 면제 조항(21CFR170.39)에 따른 요청서 제출 가이드선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Ingredients/Additives/GRASPackaging/ucm081833.htm>)

133) 식품포장재 관련 참고 전문지
(<https://www.foodsafetyandinspections.com/magazine-archives/augustseptember-2008/food-packaging-inks-and-coatings-achieving-safety-and-compliance/>)
(<http://www.packaginglaw.com/special-focus/fathoming-food-packaging-regulation-revisited>)

등의 '가정용 기구용기(houseware)'가 상기 관리체계로부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면제 신청이 수락된 성분은 데이터베이스¹³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정의) 가정용 기구용기에 대한 정의나 유형을 밝힌 규정이나 지침은 없음
- (관리 현황) 식품의약품청(FDA)은 '가정용 기구용기 면제'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제약 상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식품의 변질과 관련된 연방법이 가정용 기구용기에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생산업체가 사용 적합성과 식품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안전성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임

□ 주요 위생용품 관리 현황

○ 세척제

- 세척제는 '2차 직접 식품첨가물'로서 사용 승인된 성분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신규 제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청(FDA)에 사용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표 VII-3> 과일과 채소에 사용 승인된 세척제 성분¹³⁵⁾

-
- (1)* 식품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된 성분이나 과일과 채소를 씻는 용도에 대한 사전 승인 (prior sanctions)이 적용되는 성분
 - (2)*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성분(9종)
 - (3)* 사탕무 절삭 이전에 용수(flume water)에 사용할 성분(10종)
 - (4) 미가공 상태가 아닌 과일과 채소에 사용할 성분(3종)
-

(* 사용 후 잔류 제제를 제거하기 위해 물(potable water)로 씻어내야 함

- 첨가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용기 라벨에 다음을 표시하여야 함
 - 첨가물의 명칭 또는 구성성분에 대한 설명
 - 관련 조항을 준수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사용법

134) Threshold of Regulation (TOR) Exemptions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TOR>)

135) 연방규정(21CFR173.315) 2차 직접 식품첨가물 중 과일과 채소의 박피 보조 또는 세척에 사용되는 제제

○ **헝겍보조제**

- 헝겍보조제(rinse aid)로서 사용 승인된 제제는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식품접촉성분 신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헝겍보조제로서 성분을 신고한 현황이 확인됨

<표 VII-4> 헝겍보조제로서 식품접촉성분 신고 현황¹³⁶⁾

헝겍보조제 성분명	제조/공급업체
· 2-Pyridinethiol-1-oxide, sodium salt (CAS Reg. No. 15922-78-8; 3811-73-2)	Ecolab, Inc.
· Polyacrylic acid, partially neutralized sodium salt, polymer (CAS Reg. No. 68479-09-4)	
· Polyacrylic acid, neutralized sodium salt, polymer (CAS Reg. No. 292842-03-6)	
· Polymaleic acid, homopolymer (CAS Reg. No. 26099-09-2).	

○ **위생물수건 및 일회용 물티슈**

- 미국은 우리나라 위생물수건이나 물티슈 등의 포(wipes)가 피부의 보습(moisturizing) 또는 청결(cleansing)(예: 아기 케어, 손 씻기, 화장 지우기, 몸 씻기, 여성청결 등)을 위한 용도를 가진 경우 화장품으로서 규제함. 다만, 포의 용도나 함유 성분(예: 환경보호청(EPA) 소관의 항균제)에 따라, 관리유형 또는 관할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표 VII-5> 포(wipes)의 관리 구분

관할기관	관리유형	설명
식품의약품청(FDA)	화장품	피부의 보습 또는 세척 용도
	의약품	피부의 세균 사멸이나 여드름, 기저귀발진 또는 기타 피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환경보호청(EPA)	-	표면의 균을 관리하는 용도(살균 및 소독제)의 포 및 곤충 방충제를 함유한 포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	가정, 직장, 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 청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

- 화장품으로서 위생물수건 등은 자율 등록¹³⁷⁾ 방식으로 관리됨. 화장품의 제조, 보관 또는 운반에 종사하는 업체에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하여야 함¹³⁸⁾

136) 식품접촉성분(FCS) 신고 조회사이트 중 ‘헝겍보조제(rinse aid)’ 검색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index.cfm?set=fcn&sort=FCN_No&order=DESC&startrow=1&type=basic&search=rinse%20aid

137) 화장품 자율 등록 프로그램 <https://www.fda.gov/Cosmetics/RegistrationProgram/default.htm#register>

138) 화장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 가이드라인/점검 체크리스트
<https://www.fda.gov/Cosmetics/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ucm2005190.htm>

○ 일회용품

- (식품영업자)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를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일회제공품(single-service articles) 취급 시 다음의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함

① 연방규정 §110.35 위생관리 (식품 영업자 적용 조항)

- (d) 식품접촉면의 위생
 - (4) 일회제공품(한번 사용하려는 기구, 종이컵 및 종이타월 등)은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고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의 오염을 막는 방식으로 취급, 소분, 사용 및 처분되어야 함

② 연방규정 §111.27 사용 장비와 기구 요건 (식이보충제 영업자 적용 조항)

- (d) 영업자는 식이보충제 또는 성분을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기구, 및 그 외 식품접촉면을 관리, 청결 및 소독하여야 함
- (5) 일회제공품(한번 사용하려는 기구, 종이컵 및 종이타월 등)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i) 적절한 용기에 보관
 - (ii) 식이보충제 성분 또는 그 외 접촉면의 오염을 막는 방식으로 취급, 소분, 사용 및 처분

-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품 취급 시 주정부의 법령을 따라야 함. 대부분의 주정부는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을 표본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Food Code'상의 일회용품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Food Code' 관련 조항]

① (1-201.10) (일회제공품의 정의)

일회제공품(Single-service articles)이란 식탁용 식기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식기류(carry-out utensils) 및 기타 유형(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조된 포장재(wrappers)와 이쑤시개, 빨대, 식사매트, 용기, 봉지 등)이 있음

② (4-102.11) 일회제공품 및 일회사용품(Single-use articles)의 특성

일회제공품과 일회사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재질은

- (A)(1) 유해성분의 이행이 가능하거나 (2) 식품의 색, 향, 맛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 (B)(1) 안전하고 (2) 깨끗해야 함

1. 일반 현황

- 호주는 세척제, 일회용 물컵, 이쑤시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 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위생용품을 포괄적으로 소관하는 법령과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음
- 다만, 개별 종류별로 식품 가공보조제 또는 식품영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위생관리, 화장품 등으로 규제 관리하고 있으며, 적용 법률에 따라 관리 기관도 분산되어 있음

<표 VIII-1> 호주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위생용품 종류	호주		
	정의	관리 기관	관리 현황
세척제	· 별도 정의 없음 · 가공보조제 정의로 같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성분허가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	· 일회용품(single-use item): 제조업체가 식품 취급과 관련하여 1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기구, 장치, 주방용품 또는 기타 물품을 의미하며, 일회용 장갑도 포함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규격제정) · 주·준주 식품안전 담당 기관(집행)	· 식품영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위생 관리 · 재질별(플라스틱, 위생지) 업체지율기준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별도 정의 없음	·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NQNAS)	· 성분허가제
위생물수건	· 화장품 정의로 같음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	· 사업자 및 제품 등록 ·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 전성분 표시

2. 위생용품의 정의

□ 개요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위생용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개별 종류를 법적으로 별도 정의하거나 개념으로 두지 않음. 다만, 식품 영업장에서 위생을 관리하고자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에서 일회용품을 정의함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¹³⁹⁾

- 세척제의 법적 정의 또는 개념은 없으나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에서 가공보조제의 유형으로 세척제가 포함됨
 - (식품 가공보조제 정의) 가공 중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되 판매 식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품공전 별표 18'에서 정한 성분을 말함¹⁴⁰⁾
- 헹굼보조제의 법적 정의 또는 개념은 없음. 다만, 업계에서 헹굼보조제를 가공보조제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인됨¹⁴¹⁾

□ 일회용품

-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¹⁴²⁾는 종류별 법적 정의 또는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음. 다만, '식품공전 3.1.1'¹⁴³⁾에서 식품 취급 관련 일회용품 정의를 규정함
 - (일회용품 정의) 일회용품(single-use item)이란 제조업체가 식품 취급과 관련하여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기구, 장치, 주방용품 또는 기타 물품을 의미하며, 일회용 장갑도 포함함
- 일회용 종이냅킨과 이쑤시개¹⁴⁴⁾같이 인체 청결과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정의 또는 개념은 확인되지 않음
-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¹⁴⁵⁾은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해 사용하거나

139) 세척제(washing agent), 헹굼보조제(rinse aid)

140)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이하 식품공전) 1.3.3. 가공보조제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6C00166>)

141) 호주 헹굼보조제 제조업체 '레드 어스 케미컬(Red Earth Chemicals)' 제품 안내서 (http://castlechem.com.au/wp-content/uploads/2013/07/Rinse-Aid_tb-Oct2013.pdf)

142)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single-use/disposable cup, spoon, chopstick, fork, knife, straw)

143) 식품공전 3.1.1. 식품안전기준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09C00816>)

144) 일회용 종이냅킨, 이쑤시개(single-use/disposable paper napkin, toothpick)

식품의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 제거하는 용도인 일회용품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¹⁴⁶⁾은 인체(손)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¹⁴⁷⁾에서 정한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음
 - (화장품 정의) 화장품(cosmetic product)이란 세척(cleansing) 등의 용도로 인체의 외표면과 접촉하는 성분 또는 제제를 뜻함

145)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single-use/disposable dish towel, dishcloth, kitchen towel, hand towel)

146)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wet tissue, wet wipe), 위생물수건(wet hand towel)

147)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08C00244>)

3.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

□ 개요

- 호주는 위생용품 종류별로 다른 법령과 관리기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식품의 가공보조제(식품공전 1.3.3)로서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이 관리함
 - (일회용품) 식품 영업장의 식품안전 위생요건(식품공전 3.2.2)로서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및 주·준주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관리함
 - (물티슈 및 위생물수건)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장품 규정으로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호주 보건부의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이 관리함

□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 (법규)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등 가공보조제는 다음의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식품공전 1.3.3 ‘가공보조제’ 중 제9조 ‘표백제, 세척제, 박피제 - 각종 식품’: 가공 보조제의 정의
 - 식품공전 별표 18-7 ‘가공보조제’¹⁴⁸⁾: 사용 허가 성분, 식품, 최대허용기준 규격
- (관리기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 일회용품

- (법규) 일회용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령과 관리기관은 없음. 다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 영업장에서의 위생 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조항을 따라야 함
 - 식품공전 3.2.2 ‘식품안전관리 및 일반 요건’¹⁴⁹⁾ 중 제17조 식품 취급자의 위생: 식품 영업장의 손씻기 시설의 일회용 타월 또는 물기를 제거하는 수단의 비치 등 요건
 - 식품공전 3.2.2 ‘식품안전관리 및 일반 요건’ 중 제23조 일회용품: 식품 또는 인체의 입과 닿는 일회용품에 대한 오염 방지, 재사용 불가 등
- (관리기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규격제정) 및 주·준주 식품안전 담당기관(집행)

148) 식품공전 별표 18-7 ‘가공보조제’ (<http://www.comlaw.gov.au/Series/F2015L00452>)

149) 식품공전 3.2.2 ‘식품안전관리 및 일반 요건’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4C01204>)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 (법규)

-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¹⁵⁰⁾: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영업자 등록
-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¹⁵¹⁾: 화장품의 정의 및 전성분표시

○ (관리기관)

- 호주 보건부의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NICNAS): 화장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영업자 등록¹⁵²⁾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화장품의 성분표시

150)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816>)

151)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08C00244>)

152) 호주 보건부,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 (NICNAS) (<https://www.nicnas.gov.au/>)

4. 위생용품 관리체계

□ 개요

- 호주는 상기 법령 및 위생용품 종류별로 각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허가한 성분에 한해 가공보조제를 제조할 수 있음
 - (일회용품) 식품 영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위생 관리를 의무화함. 다만, 일회용품의 재질에 따라 일부 산업체 자율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물티슈 및 위생물수건) 화장품으로서 산업용 화학물질 사업자 및 제품 등록,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전성분 제품 표시 등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짐

□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

- (성분허가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사전 승인한 가공보조제 성분만 사용해야 하며,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식품과 최대허용기준 규격을 따라야 함

<표 VIII-2> 가공보조제 사용 가능 성분 목록

성분	식품	최대허용기준(mg/kg)
과산화 벤조일(Benzoyl peroxide)	모든 식품	40 (안식향산으로 측정)
브로모-클로로-디메틸하이단토인 (Bromo-chloro-dimethylhydantoin)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2.0 (무기 브롬 화물)
		2.0 (디메틸하이단토인)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염소(Chlorine)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제2인산암모늄(Diammonium hydrogen orthophosphate)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디브로모-디메틸하이단토인(Dibromo-dimethylhydantoin)	모든 식품	2.0 (무기 브롬 화물)
		2.0 (디메틸하이단토인)
2-에틸헥실 황산나트륨(2-Ethylhexyl sodium sulphate)	모든 식품	0.7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모든 식품	5
요오드(Iodine)	과일, 채소, 알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질소산화물(Oxides of nitrogen)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오존(Ozone)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과초산(Peracetic acid)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성분	식품	최대허용기준(mg/kg)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ite)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도데실벤젠 술폰산 나트륨 (Sodium dodecylbenzene sulphonate)	모든 식품	0.7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모든 식품	1.0 (유효 염소)
라우레이트 나트륨(Sodium laurate)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메타중아황산나트륨(Sodium metabisulphite)	근채류	25
과산화 나트륨(Sodium peroxide)	모든 식품	5
과황산 나트륨(Sodium persulphate)	모든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건조 덩굴식물의 과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별표 18 ‘가공보조제’ 중 ‘7. 표백 세척제, 박피제 - 각종 식품’)

□ 일회용품

- 일회용품 종류별 안전 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다만, 식품 영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에서의 위생 측면으로 관리함
- (영업장의 식품취급자 위생 관리) 식품 영업장은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과 일회용 타월을 비치해야 함

<표 VIII-3> 식품 취급자의 위생 관리를 위한 업장 내 일회용 타월 등의 비치

<17. 식품 취급자의 위생 - 식품 영업자의 의무>

식품 영업자는 영업장마다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쉽게 접근 가능한 손씻기 시설을 유지한다
- (b) 손씻기 시설 또는 인근에는 다음을 유지해야 한다
 - (i) 따뜻한 흐르는 물 및
 - (ii) 비누; 또는
 - (iii)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타 물품
- (c) 손씻기 시설은 손과 팔,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용도여야만 한다
- (d) 식품 영업자는 손씻기 시설 또는 인근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i) 일회용 타월 또는 손을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되 손에 병원성 미생물을 전이시키지 않아야 한다
 - (ii) 필요시, 사용한 타월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별표 18 ‘가공보조제’ 중 ‘7. 표백 세척제, 박피제 - 각종 식품’)

- (영업장의 일회용품 위생 관리) 식품 영업장은 식품 또는 인체의 입과 닿는 일회용품에 대한 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

<표 VIII-4> 식품 영업자의 일회용품 위생 관리

<23. 일회용품>

식품 영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다음의 경우, 모든 일회용품은 식품 또는 인체의 입과 접촉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i) 오염 또는 (ii) 오염이 합당하게 의심되는 경우

(b) 식품 또는 인체의 입과 접촉하는 일회용품은

(i) 사용하기 전까지 오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며, (ii) 재활용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 3.2.2.23 중 '제23조 일회용품의 요건')

- 일회용품의 재질별 업체 자율 기준

-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소재 자율 제조기준) 국가산업표준인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소재(AS 2070-1999)¹⁵³⁾에서 업체의 자율 제조기준을 마련함¹⁵⁴⁾

- 대상 업체: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소재(수지, 과립 및 가루) 및 착색제 제조업체
-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소재 예: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식기류 등
- 주요 내용: 제조 단계별 기준

- (위생지 업체 자율 기준) 비영리단체 호주 환경선택재단(GECA)¹⁵⁵⁾이 호주환경라벨 자율인증 기준의 일환으로 '위생지 제품(Sanitary Paper Products)¹⁵⁶⁾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생지 제품의 예: 종이냅킨, 종이 타월, 핸드 타월 등
- 주요 항목: 재질 요건, 유해성분(계면활성제, 표백제, 염료 및 첨가물, 중금속, 항균 첨가제, 발암 성분, 용매제 및 세척제 등), 포장 요건

153) 호주표준협회,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소재(AS 2070-1999) (유료)

(<https://www.standards.org.au/standards-catalogue/sa-snz/agriculture/ft-029/as--2070-1999>)

154)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포장 화학물질의 식품 이행 - 업계 기준, 관리기준 및 지침'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Documents/P1034-Packaging-CFS-SD7.pdf>)

155) 호주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자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자체 기준 및 제도를 운영함. 사무기기, 생활용품, 재활용 제품 등 38개 기준을 운영하며, 2,000여 개 제품 인증을 유지(2014.4)

156) 호주환경선택재단 '위생지 제품' 자율 기준

(https://www.geca.eco/wp-content/uploads/2017/02/GECA_13-2007_Sanitary_Paper_Products_May_2012.pdf)

<표 VIII-4> 종이냅킨 등 위생지의 환경라벨인증 요건

3.4.3.3 중금속

염료, 착색제, 세제(lotion) 또는 향료에 납, 구리, 크롬, 니켈, 알루미늄 또는 카드뮴이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리 프탈로시아닌 염료 또는 착색제는 제외한다. 염료의 이온 불순물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알루미늄 100ppm, 비소 50 ppm; 바륨 100 ppm; 카드뮴 20 ppm; 코발트 500 ppm; 크롬 100 ppm; 구리 250 ppm; 철 2 500 ppm; 수은 4 ppm; 망간 1000 ppm; 니켈 200 ppm; 납 100 ppm; 셀레늄 20 ppm; 안티몬 50 ppm; 주석 250 ppm; 아연 1500 ppm

3.4.3.4. 향균 첨가제

유기 염소 매개체 등 향균 첨가제(예. 트라이클로산)를 유효하게(actively) 추가해서는 아니된다.

3.4.3.5 발암 성분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1군 또는 2A군 발암성분을 첨가해서는 아니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시험법 8315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법을 적용한 종이제품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mg / dm² 포름알데히드, 1.5 mg / dm² 글리옥살

(출처 : 호주 환경선택재단 '위생지 제품' 호주환경라벨 기준 중 일부 발췌)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위생물수건은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과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으로 ▲사업자 및 제품등록,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전성분 표시를 관리함
- (사업자 및 제품 등록)
 -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에 따라 산업용 화학물질 또는 함유 제품을 상업용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와 제품을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NICNAS)에 등록해야 함¹⁵⁷⁾
 - 등록은 당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 유효하며, 1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에 따라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NICNAS)에서 화학물질의 성분 목록과 신규 물질 평가, 2차 신고 관리가 이루어짐

157) 호주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 영업자 신고
(<https://www.nicnas.gov.au/register-your-business/do-i-need-to-register-my-business>)

- (화학물질 성분 목록) 화학성분 목록(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s Substances, AICS)¹⁵⁸⁾에 미포함된 성분은 신규 화학물질 평가를 별도로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현재 기등록된 화학물질은 4만 여 종으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가능함
- (신규 화학물질 평가)¹⁵⁹⁾
 -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에 따라 화학성분 목록 또는 조건부 화학성분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등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위해평가 항목으로는 노출평가,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작업 건강 및 안전성 평가, 공중보건 평가, 환경 평가, 증거력 평가 등이 있음
- (2차 화학물질 신고) ‘산업용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에 따라 기신고 또는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면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기존 화학물질의 용례가 새로 생겨나거나 수입 또는 제조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제조공법이 변경된 경우 등이 포함됨¹⁶⁰⁾
- (전성분 제품 표시) ‘무역 관행(소비재 정보 기준)(화장품) 규정 1991’에 따라 호주에서 제조하거나 호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제품 또는 용기에 전성분을 표시해야 함¹⁶¹⁾
 - 성분명은 중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표시해야 하나 성분별 함량이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아도 됨

158) 호주 화학성분 목록(AICS) (<https://www.nicnas.gov.au/chemical-inventory-AICS>)

159) 호주 신규 화학물질 평가 (<https://www.nicnas.gov.au/chemical-information/new-chemical-assessments>)

160) 호주 2차 화학물질 신고 안내 (<https://www.nicnas.gov.au/notify-your-chemical/secondary-notifications/providing-secondary-notification-information>)

16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화장품 원료 표시 안내 (<https://www.productsafety.gov.au/standards/cosmetics-ingredients-labelling>)